

시 정 권 고 사 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인 2005년 7월 27일까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거, 정기간행물에 의한 피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원 기사 가운데 실명 및 주소가 보도되어 문제가 된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생각하여 「○○」으로 표기 했습니다. …… 편집자 주

〈시정권고 제2005-1호〉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성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4년 12월 1일자 3면 『재래시장서 자릿세 갈취 덜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충주경찰서는 재래시장에서 영세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아 챙긴 시장 상우회 회장 최모 씨(36·충주시 ○○동) 등 2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충주 ○○, ○○시장에서 김모 씨(47·수원시 ○○구 ○○동) 등 영세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안 내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게 내는 상인들에게는 시장 번두리로 자리 배정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세상인 16명에게 모두 1,49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호〉

중부일보 발행인 이 강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4년 12월 8일자 19면 『수원지검, 전 ○○○○ 간부 압송』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정씨는 ○○전자 ○○○총괄팀에서 퇴사, ○○○○ 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7년 7월부터 11월까지 삼성, LG반도체 전 직원들을 영입해 64메

가 DRAM 회로도 등 150억 9천여만 원 상당의 기밀문서를 빼돌려 대만의 경쟁업체 ○○○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으며 2년 뒤인 1999년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해온 효자 품목인 삼성과 LG의 반도체 주요 기술을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 99년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 ○○○○(주) 이사 정○○(42) 씨가 7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는 설명의 자료사진.”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나이·전근무처 및 직위와 함께 상반신 사진 등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3호〉

전남도민일보 발행인 박 양 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남도민일보 2004년 12월 21일 자 11면 『선박충돌 후 도주 40대 선장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해상정비중인 선박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선적 ○○선 제○○○○호(43t급) 선주 김모(42·부산시 ○구 ○○○동)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남

남해군 ○면 ○○리 0.6마일 앞 해상에서 ○○선적 4.22t급 잠수기어선 ○○호와 충돌한 뒤 곧바로 광양항 방향으로 달아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유 선박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4호〉

경남신문 발행인 김 상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4년 12월 22일자 21면 『도 ○○사회장 기금횡령 혐의 입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진해경찰서는 22일 ○○사 회관 건립 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도 ○○사회 회장 문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월 ○○시 ○○동 ○○사회 사무실에서 ○○사 회관 건립비용인 2천 100만 원의 기금을 횡령하는 등 지난 7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5천 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단체명과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5호〉

일요시사 발행인 이 용 범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일요시사 2004년 12월 5일자 45면 『청원경찰 8명 2억대 횡령』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화성경찰서는 22일 관광객들이 받아가지 않은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관리공단 소속 최모(27) 씨 등 청원경찰 6명을 구속하고 강모 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 ○○면 ○○리 ○○도 관광유원지 매표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돈만 내고 받아가지 않은 입장권(대인 1천 원 소인 5백 원)을 모아 다른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 5천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6호〉

전남매일 발행인 유 동 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남매일 2004년 12월 20일자 5면 『화순서 새벽 3인조 강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17일 새벽 3시 10분께 화순군 ○○면 ○○리 김모 씨(48)의 집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30대 초반의 괴한 3명이 침입, 신용카드 2장과 에쿠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7호〉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4년 12월 20일자 19면 『가정집 강도 10대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14일 새벽 5시께 익산시 ○○면 ○○리 유모 씨(44·여)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 유씨를 흉기로 위협해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70만 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9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8호〉

충남일보 발행인 박 영 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남일보 2004년 12월 17일자 10면 『필로폰 상습 투약한 피의자 3명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 15일 부산시 ○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필로폰 약 ○○○그램을 구입하여 ○○○에 타서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

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9호〉

뉴시스 발행인 최 해 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4년 12월 22일자 『○○○○○○○ 이용, 필로폰 밀반입 흡입한 외국인 2명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D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경기 ○○시 ○○구 ○○동 자신들이 근무하는 H섬유 내에서 필로폰 ○○g을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배달된 ○○○○○○○를 통해 시가 ○○○만 원 상당의 필로폰 ○○g을 밀반입받아 공장 기숙사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구입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0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4년 12월 22일자 『○○○○○○로 히로뽕 밀반입』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18일 필리핀 현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받은 히로뽕 ○○g(시가 ○○○만 원 상당)을 ○○○○○○속에 숨겨 들여와 ○○시 ○○공단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g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구입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1호〉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최 중 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도민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0면 『필로폰 밀반입, 흡입 필리핀인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시 ○○구 ○○동 자신들이 근무하는 H점 유 내에서 필로폰 ○○g을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배달된 ○○○○○○를 통해 시가 ○○○만 원

상당의 필로폰 ○○g을 밀반입 받아 공장 기숙사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구입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2호〉

경기매일 발행인 장 성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매일 2004년 12월 23일자 15면 『○○○○속 히로뽕 밀반입』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18일 필리핀 현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받은 히로뽕 ○○g(시가 ○○○만 원 상당)을 ○○○○○○속에 숨겨 들여와 ○○시 ○○공단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g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구입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3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4년 12월 23일자 15면 『○○○○에 히로뽕 밀반입』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18일 필리핀 현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받은 히로뽕 ○○g(시가 ○○○만 원 상당)을 ○○○○○○속에 숨겨 들여와 ○○시 ○○공단 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g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구입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4호〉

도민일보 발행인 권 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도민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5면 『필로폰 밀반입 ○○ 외국인 둘 구속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D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경기 ○○시 단원구 ○○동 자신들이 근무하는 H점유 내에서 필로폰 ○○g을 흡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배달된 ○○○○○○○를 통해 시가 ○○○만 원 상당의 필로폰 ○○g을 밀반입 받아 공장 기숙사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구입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5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 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4면 『○○○ 이용 히로뽕 반입』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18일 필리핀에서 히로뽕 ○○g(시가 ○○○만 원 상당)을 ○○○○○○속에 숨겨 들여와 ○○시 ○○공단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g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구입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6호〉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최 종 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도민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0면 『강도협박의 30대 마약투약 딜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께 동경 인근 모 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000g(시가 00만 원상당)을 구입, ○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회 사용량과 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7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4년 12월 23일자 15면 『마약투약 30대 구속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15일 새벽 12시 30분께 동경 인근 모 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000g(시가 00만 원상당)을 구입해 ○차레에 걸쳐 흡입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회 사용량과 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8호〉

도민일보 발행인 권 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도민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5면 『마취제 강도 용의자 마약투약 혐의 딜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나씨는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께 동경 인근 모 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000g(시가 00만

원상당)을 구입, ○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회 사용량과 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19호〉

우리일보 발행인 김 석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23면 ‘청사초롱’란 『강도대신 마약 투약 덜미 경찰 조사 받던 중 ‘들통’』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나씨는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께 동경 인근 모 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g(시가 ○○만원상당)을 구입, ○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회 사용량과 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0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4년 12월 24일자 3면 『필로폰 복용·판매 40대 둘 구속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가 ○○○만 원 상당의 필로폰 ○g을 구입해 ○○○g을 ○회에 걸쳐 복용하고,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황씨에게 필로폰 ○○g을 ○○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 21일 오전 2시께 필로폰 ○○○g을 ○회 복용하고, 남은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회 사용량과 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1호〉

충북일보 발행인 이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4년 12월 13일자 3면 『모친 산소에서 20대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1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 ○○면 ○○리 야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이모 씨(23)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모 씨(66)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5살 때 여원 어머니 묘지에서 잠을 자곤했다는 주변사람들의 말로 미뤄, 어머니가 그리워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동기 등을 조사.”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2호〉

새전북신문 발행인 김 현 중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4년 12월 14일자 6면 『취업고민하던 20대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3일 오후 5시 30분께 ○○시 ○○동 ○○마을 한모 씨의 축사안에서 이 마을에 사는 한모 씨(26)가 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주민 임모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한씨가 취업을 못해 괴로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를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

나 거주하던 마을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3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4년 12월 20일자 『형사사건 피의자 스스로 목숨끊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충남 ○○시 ○○면 ○○리 한 움막에서 이 마을에 사는 장모(34)씨가 ○○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장씨는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충남 ○○시 ○○면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A(21)씨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A씨의 옷을 ○○ ○○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장씨가 경찰의 추적에 압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

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4호〉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4년 12월 21일자 5면 『성폭력 피의자 자살 뒤늦게 밝혀져 물의』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다방여종업원 강제추행 등의 용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30대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오전 9시께 ○○시 ○○면 ○○리 한 움막에서 마을 주민 장모(34) 씨가 ○○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장씨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압박감을 느껴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5호〉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4년 12월 21일자 14면 『형사사건 피의자 스스로 목숨끊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충남 ○○시 ○○면 ○○리 한 움막에서 이 마을에 사는 장모(34) 씨가 ○○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장씨는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A(21)씨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A씨의 ○을 ○○○ ○○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장씨가 경찰의 추적에 압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6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6면 『생활고가 앓아간 ‘부자의 행복’·30대 실직 가장, 5살 아들 살해뒤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

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실직 가장이 5살난 아들을 ○○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중략… 고씨는 방 안의 못에 ○○○ ○으로 목을 매달았고 옆에는 고씨의 아들이 ○○에 ○이 ○○ 피를 흘린 채 이불에 덮여 있었다. 시신은 며칠이 지났는지 상당히 부패돼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는 전기세 등 밀린 세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마시다 남긴 소주병과 라면 봉지가 뒤굴고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독에는 쌀도 없었다. 경찰이 집 곳곳을 수색해 찾은 돈은 겨우 600원이었다. 경찰조사결과 고씨는 3년 전 부인 박모(30) 씨가 가출한 뒤 아들과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어려운 생활 때문에 형제들과 연락도 끊고 5개월 전 실직한 상태에서 임시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고씨는 임대료 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이 임씨의 설명…”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방법 및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2호·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7호〉

무등일보 발행인 오 중 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무등일보 2004년 12월 23일자 19면 『죽음 밖에 없었다… ‘비정한 부정’. 극심한

생활고 못견딘 30대 가장 여섯 살난 아들 죽이고 목숨 끊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지난 21일 ○○시 ○구 ○○동 주택가 한 가정집에서 고모(38) 씨가 여섯살난 아들을 죽이고 자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중략… 이웃 주민과 가족들에 따르면 3년전 이혼한 후 형제·친척과 연락을 끊은 고씨는 어린 아이를 마땅히 맡겨둘 수 있는 형편이 안돼 쉽게 직장을 얻지 못해 6개월 전부터는 각종 공과금과 방세 등을 못낼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전기세 등 세금은 고사하고 방세도 내지 못한 고씨는 라면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고씨는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고 한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살해한 뒤 고씨는 아들의 사체를 목욕을 시키고 두툼한 새옷으로 갈아입혔다. 고씨는 곧바로 자살을 시도, 실패를 거듭하다 아들이 유아시절 사용하던 ○ ○○○를 이용해 ○○ ○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방법 및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2호·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8호〉

일요신문 발행인 신 상 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일요신문 2004년 12월 12일자

27면 『천륜 짓밟은 불륜의 바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잠시 뒤 어디선가 나타난 ○○ ○○ 한 대가 이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을 피해 도로 한켠으로 비켜섰지만 오히려 ○○은 갑자기 ○○을 내며 이들에게 ○○들었다. 미처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에 받혀 쓰러졌고 그 ○를 ○○ ○○○가 밟고 지나갔다. 그 직후 ○○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인근 D물산 경비실엔 ‘난리’가 났다. 한 경비원이 이 두사람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 ... ‘한 집안의 가장이 불륜에 빠져 아내와 아들을 뺑소니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사건 현장의 ○○○이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는 설명의 자료사진.”

이 유

위 기사는 가장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타살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고 사건 현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1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29호〉

월요신문 발행인 박 종 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월요신문 2004년 12월 26일자 24~25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맞고 살 수 없었어요”』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사건을 숨기기 위해 ○○를 ○○내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 두 사람은 숨진 손씨의 사체를 집안 ○○로 ○○ 갔다. 전직 정형외과 간호사 출신인 딸과 고씨는 ○○를 ○○○○으로 ○○낸 뒤 2차례에 걸쳐 유기했다. ○○과 ○○ 등 일부 ○○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 공원의 ○○○에,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는 범행 다음날 ○○○를 이용해 집에서 30km정도 떨어진 구산면 야산에 갖다버렸다. 특히 고씨와 딸은 완전범죄를 위해 ○○를 ○○내는 과정에서 ○○○의 ○○을 모두 ○○냈다...”

이 유

위 기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사건을 보도하면서 타살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1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1. 17.

〈시정권고 제2005-30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 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2월 2일자 15면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중생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평택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 여 종업원을 강간·추행한 주유소 ○○ 조

모(62·남)씨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평택시 OO면 소재 O주유소에서 OO으로 근무하는 자로 지난해 8월 중순께 주유소에서 주유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O양(15·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달 31일 밤 9시께는 주유소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 옆 창고 내 쇼파에서 잠시 가만 중인 O씨를 성폭행하고 주유소 2층 거실에 앉아있던 O씨의 OO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의 성과 나이 및 직위,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면까지 밝히면서 같은 근무처에서 일하는 성폭행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헌법 제21조 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3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1호〉

광남일보 발행인 박 행 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남일보 2005년 1월 20일자 18면 『고객돈 10억 횡령 금고 간부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목포경찰은 19일 고객돈 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목포 O동 OOOOO 간부 김모 씨(57·목포시 OO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3월까지 최모 씨(34)와 최씨 부모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2호〉

대한일보 발행인 김 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한일보 2005년 1월 20일자 8면 『고객돈 10억여 원 횡령』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고객돈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목포 O동 OOOOO 간부 김모 씨(57·목포시 OO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3월까지 최모 씨(34)와 최씨 부모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3호〉

무등일보 발행인 오 중 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무등일보 2005년 1월 20일자 19면 『10억 원 횡령 금고 간부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목포경찰서는 19일 고객센터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목포 O동 OOOOO 간부 김모(57·목포시 OO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3월까지 최모(34) 씨와 최씨 부모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4호〉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1월 20일자 5면 『OOOOO 간부 고객센터 수억 횡령』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목포경찰서는 19일 고객센터 10여억원을 횡령한 목포 O동 OOOOO 간부 김모 씨(57·목포시 OO동)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3월까지 최모 씨(34)와 최씨 부모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5호〉

전라일보 발행인 유 춘 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라일보 2005년 1월 17일자 4면 『새벽 편의점 2인조 강도 침입』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전주시 OO동 000 마트 00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흥기를 들고 침입, 종업원 김모 씨(21)를 위협 한 뒤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했으나 근무처의 명칭 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 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6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 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1월 19일자 14 면 『가정집 침입 폭행·절도』 제목의 기사 중 아 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낮 12시경 경기도 00시 00면 00리 소재 최모 씨 (45·여)의 집에 침입해 장롱 속에 숨어 있다 방 으로 들어오는 최씨를 마구 때리고 흥기로 위협,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과 귀금속 등 1,5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했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7호〉

광남일보 발행인 박 행 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남일보 2005년 1월 10일자 18 면 『000 간부 성상납 요구 물의』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00000000 간부가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성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 0구 000 채모 0000(41)이 계약직 여직원 인 나모 씨(27·여)에게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 금까지 4차례에 걸쳐 “성상납과 정치적인 활동을 도와주면 재계약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성상납 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나씨는 채씨 와 만남을 가진 지난 해 12월 22일께 대화내용을 녹취, 지난 5일께 경찰에 채씨를 고발한 상태이 다...”

이 유

위 기사는 비정규 계약직 여직원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성상납을 강요한 간부와 이를 요구받 은 여직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 처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 지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형법 제307조 2항, 민법 제764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 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8호〉

경남일보 발행인 김 홍 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5년 1월 20일자 14면 『필로폰 투여 40대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께 〇〇시 〇〇동 모 주점앞 승용차에서 〇〇〇〇〇〇(속칭 필로폰) 〇〇〇그램을 〇과 〇〇 투여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39호〉

동아일보 발행인 김 학 준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5년 1월 24일자 A10면 『무서운 부사장의 회사탈취 공작』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 씨는 같은 달 20일 후배(29·구속기소)를 통해 히로뽕 〇〇g을 〇〇〇만 원에 구매 사장의 차 트렁크에 〇〇g을 숨겨뒀다. 또 저녁 회식 도중 사장과 회사 여직원의 〇〇〇에 〇〇〇g씩을 몰래 〇 넣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복용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0호〉

서울신문 발행인 채 수 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5년 1월 24일자 7면 『무서운 부사장. 더 무서운 어머니』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권씨를 마약사범으로 몰기로 시나리오를 짰 이들은 후배 이씨의 교도소 동기인 또 다른 이모 씨에게서 히로뽕 〇〇g을 〇〇〇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D데이’로 잡은 같은 달 21일, 이들은 히로뽕 〇〇g을 권씨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그날 밤 회사 부근 나이트클럽의 회식자리에서 권씨와 경리 여직원 남모(32) 씨의 〇〇〇에 몰래

히로뽕 〇〇g씩을 〇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복용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1호〉

한겨레 발행인 고 희 범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겨레 2005년 1월 24일자 6면 『작전명 ‘몰래뽕’』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후배 이아무개(29) 씨를 시켜 이씨의 교도소 동기(29)한테 〇〇〇만 원에 히로뽕 〇〇g을 구입했다. 이씨 등은 다음날 회사 회식 도중 나이트클럽에서 ㄱ씨와 여직원 ㄴ(32)씨의 〇에 히로뽕 〇〇〇g씩을 몰래 넣어 〇〇게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복용방법·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2호〉

서울경제 발행인 임 중 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경제 2005년 1월 24일자 22면 『엽기 부사장 덜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L씨는 후배 이씨를 시켜 지난해 10월 〇〇〇만원에 히로뽕 〇〇g을 확보, 다음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〇〇〇g의 히로뽕을 사장 K씨와 여직원 N씨의 〇〇〇에 뒀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사용량·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3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1월 23일자 『경연권 뺏으려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먼저 지난해 10월 20일 후배 이모(29) 씨를

시켜 〇〇〇만 원에 히로뽕 〇〇g을 확보했다. L씨 등은 다음날 형견 필통에 넣은 히로뽕 〇〇g을 K씨 승용차 스페어타이어 안에 숨겨놓은 다음 나머지의 일부는 몸에 소지했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소란한 틈을 타 1회 투약분(〇〇〇g)보다 많은 〇〇〇g씩 K씨와 여직원 N씨의 〇〇〇에 〇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〇회 사용량·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4호〉

뉴시스 발행인 최 해 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5년 1월 23일자 『사장에 몰래 필로폰 투약, 신고-경영권 탈취 기도 부사장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마산의 한 폭력배로부터 〇〇〇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〇〇g을 구입, 이중 〇〇〇g을 회식자리에서 사장에게 몰래 먹인 뒤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삼겹살로 끝난 1차 회식에 이어 나이트 클럽으로 이어진 모임에서 후배 이씨는 사장의 〇〇〇에 히로뽕 〇〇〇g을 넣고 선배 이씨는 〇〇를 〇〇 사장과 여직원이 차례로 〇〇게 한 것....”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사용량·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5호〉

더데일리포커스 발행인 이 규 행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더데일리포커스 2005년 1월 24일자 6면 『경영권 뺏으려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누명찍은 파렴치한 부사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먼저 지난해 10월 20일 후배 이모(29) 씨를시켜 〇〇〇만원에 히로뽕 〇〇g을 확보했다. L씨 등은 다음날 형견 필통에 넣은 히로뽕 〇〇g을 K씨 승용차 스페어타이어 안에 숨겨놓은 다음 나머지의 일부는 몸에 소지했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소란한 틈을 타 1회 투약분(〇〇〇g)보다 많은 〇〇〇g씩 K씨와 여직원 N씨의 〇〇〇에 〇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1회 사용량·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 권고 제2005-46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5년 1월 25일자 15면 『러미나 복용협의 미군 군무원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지간인 손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의정부 일대 9곳의 ○○을 돌며 ○○○ ○○처럼 증상을 호소, ○○○○을 구입한 뒤 이중 러미나(1천973정)만을 골라 1회 ○○정씩을 나눠 복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항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의 구입방법과 사용량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 권고 제2005-47호〉

충남일보 발행인 박 영 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남일보 2005년 1월 27일자 10면 『상습 필로폰 투여 50대 박모 씨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자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그램 중 ○○○그램을 ○○에 희석해 ○○에 투여한 혐의이다. 조사결과 박모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그램 시가 ○○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에 ○○해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 권고 제2005-48호〉

충북일보 발행인 이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5년 2월 1일자 2면 『필로폰 투약 40대·50대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충주시 문화동 모 여관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필로폰 ○○○g을 ○○에 ○○해 투약한 혐의다. 양씨는 또 29일 밤 11시 30분께 필로폰 ○○○g을 ○○에 ○서 ○○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49호〉

우리일보 발행인 김 석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5년 1월 10일자 23면 『현직 경찰관 아파트 투신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것을 비관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새벽 1시께 서울 ○동의 모 아파트 19층에서 ○○경찰서 소속 ○○ ○○○○ 김모(46) 경감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 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0호〉

서울신문 발행인 채 수 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5년 1월 14일자 14면 『○○○ 빗 8억 못갚아 일가족 5명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빚에 시달리던 40대 ○○○ 주인이 모친, 세 자녀와 함께 불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경찰은 ○○○ 종업원 등을 통해 일단 형체가 남아 있는 시체가 차주이자 제주시 ○동 ○○○○ 주인 김모(40) 씨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체 4구는 김씨의 ○○살 노모, 5살·8살·11살 딸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가 4년여 전 ○○한 데다 3년 전 ○○○ 2층 건물을 신축하고 ○○○ 등을 구입하면서 8억여 원의 빚이 생겨 지난해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최근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동반자살한 가족의 나이와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및 생존시 운영하던 업소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1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1월 13일자 『빛더미 000주인 가족 5명 동반자살』, 『빛몰린 000 일가족 동반자살 ‘충격’』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빛에 시달리던 40대 000주인이 모친, 세 자녀와 함께 불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경찰은 000종업원 등을 통해 일단 형체가 남아있는 사체가 차주이자 제주시 0동 0000주인인 김모(40) 씨로 확인했다. 또 지난 3일 오후 5시께 김씨가 가족과 함께 가출, 연락이 두절돼 이날 오후 10시께 실종신고를 했다는 000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나머지 사체 4구는 김씨의 00살 노모, 0살, 0살, 00살 딸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중략… 경찰은 김씨의 아내가 4년여 전 자살한데다, 3년 전 0002층 건물을 신축하고 000 등을 구입하면서 8억여 원의 빚이 생겨 경기가 악화된 지난 해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최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000주인 일가족 5명의 변사체 발견은 과다한 채무와 빚 변제독촉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외에도 무리한 사업확장과 인명경시 풍조등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비극이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000주인 김모(40)씨는 10년 전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000를 운영하며 종업원 7명까지 두는 대형 000로 키웠다. 000영업이 비교적 잘 되자 김씨는 3년 전 은행 대출을 받아 000 겸 주거용 2층 건물을 신축, 000까지 외상으로 들여왔고 이 과정에서 8억여 원의 빚을 지게됐다. 그러나 불황으로 지난 해부터 세탁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며 종업원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를 받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삶을 비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동반자살한 가족의 나이와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및 생존시 운영하던 업소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2호〉

한라일보 발행인 강영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라일보 2005년 1월 14일자 4면 『일가족 5명 불에 타 숨져』, 『경제한파에 어린 자식들까지』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000를 운영하던 30대 가장과 노모, 세명의 자녀 등이 불에 탄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경찰확인 결과 이날 발견된 시신들은 지난 3일 실종신고된 김모 씨(39·제주시)와 김씨의 노모 이모 씨(76) 그리고 김씨의 4살 7살 10살 난 세딸로 확인됐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 0동에서 종업원 6~7명을 고용하고 95평 규모의 00업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연락이 끊겨 종업원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종업원들은 김씨가 2~3년전 사업을 확장 이전하면서 부지를 구입,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은행 등에서 수 억원의 빚을 지고 상환독촉을 받아 왔으며 이를 고민해왔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사업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에 불어닥

친 경제한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중략... 주변사람들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10여년간 〇〇업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2년 95평의 부지에다 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종업원도 사업이 잘 되던 때는 10명까지 고용할 정도로 여느 〇〇와 달리 사업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은행 1곳에만 5억 8천 백여만 원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채 1억 2천만 원 등 확인된 금액만 7억여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일대 유흥업소가 매출의 상당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후반 불어닥친 단속 여파로 업소들이 문을 닫자 이에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업원이 6~7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월급도 체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김씨의 부인도 4년 전 〇〇〇 〇〇을 끊어 사업부진과 함께 김씨를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동반자살한 가족의 나이와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및 생존시 운영하던 업소의 구체적인 규모와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3호〉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안 형 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강원도민일보 2005년 1월 17일

자 3면 『80대 노인 신병비관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5일 오후 4시쯤 춘천시 〇〇면 〇〇리 자신의 집에서 안모(83)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카 안 모(4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평소 〇〇으로 〇〇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〇〇을 〇〇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4호〉

강원일보 발행인 최 승 익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강원일보 2005년 1월 18일자 5면 『‘독버섯’ 자살사이트 대책없나』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횡성군 갑천면 중금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조모(여·23·전북군산시) 김모(24·홍천군)씨 등 2명이 〇〇〇 〇〇〇에 〇〇〇〇를 연결, 〇〇 안에 〇〇

〇〇를 〇〇시키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본보 17일자 5면 보도)했다. ...중략... 당시 조씨는 강릉시 사천면 공동묘지 인근 야산에 〇〇〇를 세워 놓고 서모(27·부산시)씨 등 2명과 함께 〇〇〇를 복용한 후 〇〇안에 〇〇〇〇가 들어 오도록 〇〇〇〇를 〇〇했다가 주민신고로 발견돼 구조됐으며 서씨 등 2명은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5호〉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5년 1월 18일자 6면 『원한있는 동료 죽이고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동료와 갈등 끝에 직장을 그만 둔 전 직원이 ○○과 ○○로 이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일 오전 6시 30분께 천안시 ○○읍 ○○리 ○○○공장에서 생산직 야간 근무하던 직원 2명을 살해한 유력용의자 김모(49) 씨가 범행 5시간 만에 자살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략... 자살한 김씨는 평소 공장직원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다 지난달 3일 회사측 권고로 퇴사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했던 직장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6호〉

새전북신문 발행인 김 현 중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5년 1월 27일자 6면 『우울증 주부 잠자는 딸 살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우울증을 앓던 주부가 두 딸의 목을 졸라 작은 딸을 숨지게 하고 큰 딸은 중태에 빠뜨린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26일 오전 8시 40분께 ○○시 ○○면 ○○리 강모 씨(45)의 집 별채 작은 방에서 작은 딸(7)은 숨져 있고 큰 딸(10)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강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강씨의 부인 김모 씨(37)는 이날 오전 6시께 충남 ○○시 ○○읍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

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7호〉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중 승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5년 1월 31일자 6면 『OO협의 검조사 받던 OOOOO 공기총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 O구 OO동 OO OOOO공사장 내에 이곳 OOO 이모(50) 씨가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다른 O OO 이모(5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승합차 안에는 빈 OOO과 이씨 소유의 OOO이 발견됐다. OOO에는 OO OO 중 OO이 남아 있었다. 이씨의 배와 허벅지 등에는 OO이 있었다. 주변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씨와 동료 등 3명은 OOO 등 OO도구를 차에 신고 2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을 배회하다 검찰 OO사범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씨 등은 24, 25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씨는 OO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6일 오전 5시께 아내 박모(47) 씨에게 “내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니 회사에 미리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유족들은 “검찰의 몰아붙이기식 수사가 자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내 박씨는 “남편은 조사 받을 때 검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강하게 다그쳤고 마치 범죄자로 취급해 괴로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략... 경찰은 일단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OO행위를 함께 한 이씨의 동료 2명

으로부터 OO행위를 자백받고 차량에서 OOO과 죽은 OOO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OO행위를 주도한 이씨의 경우 27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8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1월 30일자 『검찰조사 받은 OO OOO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O구 OO동 OOO OO 안에서 OO OOO 이모(50) 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엮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O OO 이모(5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차 안에서 빈 OOO과 OOO OO 중 OO 만이 발견되고 배에 OO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달 2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께 아내 박모(47) 씨에게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회사에

애기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앞서 〇〇〇 이씨는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 〇〇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아내 박씨는 “남편은 조사 받을 때 검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다그쳤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해 괴로웠다고 말했다”며 검찰측 조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검찰 조사 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이씨 차량에 〇〇〇 등 〇〇도구를 실은 채 수도권 매립지 부근을 배회하다 〇〇사범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〇〇행위를 한 공범들로부터 〇〇〇 〇〇 사실을 자백받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다음날인 27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59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5년 1월 31일자 15면 『〇〇〇〇 〇〇혐의 검찰조사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30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 안에서 〇〇 〇〇〇 이모(50) 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엮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〇〇〇 이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차 안에서 빈 〇〇〇과 〇〇〇 〇〇 중 〇 〇만이 발견되고 배에 〇〇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31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〇〇〇 이씨는 지난 24-25일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〇〇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아내 박씨는 “남편은 조사받을 때 검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다그쳤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해 괴로웠다고 말했다”며 검찰측 조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검찰 조사 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0호〉

경도일보 발행인 신 순 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도일보 2005년 1월 31일자 11면 『검찰조사 받은 후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시 O구 OO동 OOO OO 안에서 OO OOO 이모(50) 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얹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O OO 이모(5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차안에서 빈 OOO과 OOO OO 중 OO만이 발견되고 배에 총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31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경 아내 박모(47) 씨에게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회사에 얘기하러 다녀 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을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1호〉

경인일보 발행인 우 제 찬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5년 1월 31일자 19면 『단순중압감· 강압수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일 인천지검과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O구 OO동 OOO OO지 안에서 OO OOO 이모(50) 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얹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OOO 이모(5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차(봉고) 안에서 빈 OOO과 OOO OO 중 OO만이 발견됐고 배에 OO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대한 부검은 31일 실시된다. 앞서 OOO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에 OOO 등 OO도구를 실은 채 매립지 부근을 배회하다 검찰의 단속반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에서 24, 25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1차조사때는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는 OOO OO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아내 박모 씨는 “남편이 조사받을 때 검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다그쳤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해 무척 괴로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이씨에 대해 OO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2호〉

수도권일보 발행인 심 정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수도권일보 2005년 1월 31일자 15면 『〇〇협의 〇〇〇 〇〇 검찰조사 후 〇〇〇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 〇〇 내에서 〇〇 〇〇〇 이모(50)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를 흘리며 엎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〇〇〇 이모(5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씨 차 안에서 빈 〇〇〇과 〇〇〇 〇〇 중 〇〇이 없어지고 〇〇만이 발견됐으며 배에 총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스스로 〇〇을 마신 뒤 〇〇〇을 자신의 복부에 발사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이씨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는 지난 24일과 25일 〇〇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차량에 〇〇〇과 〇〇도구를 실은 채 수도권 매표지를 배회하다 〇〇사범 단속에 적발돼 지난 26일 〇〇행위를 한 공범들로부터 〇〇〇 등 〇〇사실을 자백받은 뒤 증거 확보를 위해 다음날인 27일 이씨를 〇〇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의 아내 박모(47·여) 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께 남편 이씨가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회사에 얘기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검찰조사 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고민하다 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

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3호〉

인천일보 발행인 황 호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5년 1월 31일자 19면 『〇〇〇〇〇 〇〇〇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 내 도로 옆에서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이모(50) 씨가 자신의 1t 봉고차량 뒷좌석에 엎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안에서 〇〇〇과 〇 등 이씨가 〇〇을 〇〇 흔적과 〇〇〇 〇〇 중 〇〇만이 발견되고 이씨의 배에 〇〇이 있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아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〇〇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의 심리적 압박감과 〇〇직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을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

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4호〉

전국매일 발행인 박 중 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5년 1월 31일자 9면 『검찰조사 받은 ○○ ○○○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구 ○○동 ○○○ ○○ 안에서 ○○ ○○○ 이모 씨(50)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얹어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다른 ○○○ 이모 씨(59)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차 안에서 빈 ○○○과 ○○○ ○○중 ○○만이 발견되고 배에 ○○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달 2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께 아내 박모 씨(47)에게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회사에 얘기하러 다녀 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씨 아내 박씨는 “남편은 조사받을 때 검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다그쳤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해 괴로웠다고 말했다”며 검찰측 조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검찰 조사 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 및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과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2. 21.

〈시정권고 제2005-65호〉

중부일보 발행인 이 강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5년 3월 1일자 18면 『후임 폭행 ○○○○○○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수원 ○○경찰서는 28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 ○○○○○○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2·수원시 ○○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과 24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구 ○○○국 1층 창고에서 후임 ○○○○○○ 이모(24)씨 등 2명에게 “일하는 속도가 늦어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며 둔기로 허벅지를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과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66호〉

충북일보 발행인 이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5년 3월 4일자 3면 『30대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단양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4·무직·○○군 ○○면 ○○리·절도 전과 10범)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리까지의 주소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67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3월 4일자 『“광주○○○ 원장이 원생 폭행” 고소장 제출』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랑자 및 행려자 보호시설 원장이 원생을 폭

행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구 ○○동 광주○○○ 원생 이모(33) 씨는 지난달 11일 원내에서 원장 박모(45)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원장 박씨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사건 발생 이후 3일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를 중심으로 광주○○○ 시설 관리원들은 박 원장이 평직으로 재직할 때도 원생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중 한 원생은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지난 84년 무등복지법인 산하 무등시립○○○으로 시설인가를 받은 광주○○○은 2003년 광주○○○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원장 박씨가 지난해 6월부터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를 받아 130여명의 부랑인과 행려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명칭과 연혁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68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5년 3월 4일자 6면 『광주보호시설 원생들 “원장에게 폭행 당했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랑자 및 행려자 보호시설의 원생들이 원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와 광주 000(구 시립000) 원생인 이모(33) 씨에 따르면 원장 박모(45)씨가 지난달 11일 원내에서 금지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이씨를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14일까지 4일간 보호실에 감금했다. 이씨는 직원들이 설 연휴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14일 아침 일부 직원들의 뜻에 따라 보호실을 나온 뒤 원장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0여 년간 광주000에서 살았다는 A씨는 “96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맞아 갈비뼈 5개가 부러졌다”며 “당시엔 쫓겨날 것이 두려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69호〉

전남일보 발행인 이 훈 동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남일보 2005년 3월 5일자 6면 『보호시설 원생 “원장이 폭행” 고소』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랑자 및 행려자 보호시설 원장이 원생을 폭

행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0구 00동 광주000 원생 이모(33) 씨는 지난달 11일 원내에서 원장 박모(45)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중략... 또 노조를 중심으로 광주000 시설 관리원들은 박 원장이 평직으로 재직할 때도 원생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중 한 원생은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0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3월 10일자 『안양 0000 원생, 복지관으로 대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0일 오전 화재가 발생, 건물이 전소된 경기도 안양시 00구 000동 0000의 원생들은 모두 시립복지관과 병원 등으로 후송됐다. ...중략... 그러나 평소 폭력, 성폭행 등으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00원 원장이 후원금 등 2억 5천만 원을 착복하고

관리자들에 의한 폭력,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9일 000 원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이날 화재 현장에서 30여개의 예금 통장을 확보, 보조금 및 후원금 등 00원층의 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원장 최모(54·여) 씨 등 관련자와 원생들을 차례로 조사해 00원층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0년대초 개인이 설립한 00 00은 미인가시설로 최근까지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등 66명을 수용해왔으며 그동안 교회, 군부대, 경찰서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동까지의 주소·영문이니셜·연혁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1호〉

뉴시스 발행인 최 해 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5년 3월 10일자 『미인가 복지시설 화재, 원생 등 40여명 긴급 대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운영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새벽에 불이 나 원생 등 4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5시 14분께 경기 안양시 00구 000동 000

0 숙소에서 불이 나 목재건물 2개동과 인근 야산 40평을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중략… 한편 미인가 복지시설인 이 00원은 원장 최모 씨(54·여)가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직원들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동까지의 주소와 영문이니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2호〉

경기매일 발행인 장 성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매일 2005년 3월 11일자 15면 『미인가 복지시설 ‘불’ 원생 대피소동』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총 2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과 입소금을 유용한 혐의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인 0000원(안양시 00동)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시설에 거주하던 37명의 장애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략… 경찰은 이에 앞서 0000원장 최모(54·여·목사) 씨가 원생들의 입소금과 각종 후원금 2억 5천여만 원을 착복했다는 정모(39·지체장애인) 씨의 진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지급되는 장애비횡령 등에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9일 오후 종적을 감춘 최모 원장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동까지의 주소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3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5년 3월 11일자 15면 『안양 미인가 복지시설서 불』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후원금 착복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원생 4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5시 15분께 안양시 00구 000동 0000에서 불이나 숙소와 사무실 2개동 100여평을 모두 태우고 45분만에 꺼졌다. ...중략... 경찰은 또 00원 원장이 후원금 등 2억 5천만 원을 착복하고 관리자들에 의한 폭력,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지난 9일 복지관 원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이날 화재 현장에서 30여개의 예금 통장을 확보하고 보조금 및 후원금 등 00원측의 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원장 최모(54·여) 씨 등 관련자와 원생들을

차례로 조사해 00원측의 위법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0년대초 개인이 설립한 0000은 미인가시설로 최근까지 알코올중독자, 장애인 등 66명을 수용해왔으며 그동안 교회, 군부대, 경찰서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동까지의 주소·영문이니셜·연혁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4호〉

경도일보 발행인 신 순 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도일보 2005년 3월 11일자 11면 『새벽, 00원 숙소 화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0일 오전 5시15분경 경기도 안양시 00구 000동 0000 숙소에서 불이 나 2개동 100여평을 태우고 45분만에 꺼졌다. ...중략... 특히 평소 폭력과 성폭행등으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00원 원장이 후원금 등 2억 5천만 원을 착복하고 관리자들에 의한 폭력,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9일 00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이날 화재 현장에서 30여개의 예금 통장을 확보, 보조금 및 후원금 등 000측의 횡령 여부에 대

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원장 최모(54·여)씨 등 관련자와 원생들을 차례로 조사해 〇〇〇측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동까지의 주소와 영문이니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5호〉

우리일보 발행인 김 석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5년 3월 11일자 23면 『안양 〇〇〇〇서 불 ... 40여 명 대피, ‘후원금 착복’ 제보로 경찰 수사 중』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운영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새벽에 불이 나 원생 등 4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오전 5시 14분께 안양시 〇〇구 〇〇〇〇 〇〇〇〇 숙소에서 불이 나 목재건물 2개 동과 인근 야산 40평을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중략... 한편 미인가 복지시설인 이 〇〇원은 원장 최모(54·여)씨가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직원들이 〇〇들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혐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동까지의 주소와 영문이니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6호〉

무등일보 발행인 오 중 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무등일보 2005년 3월 11일자 19면 『동료 찢은 40대 〇〇 체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〇〇에서 동료 〇〇을 흉기로 찢은 혐의로 〇〇〇〇 선원 이모(44)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〇〇면 〇〇도 근해에서 〇〇〇〇〇와 연결된 같은 선단 93t급 〇〇〇〇〇〇선 〇〇〇〇〇〇호에 옮겨 탄 뒤 이 배에 근무하던 〇〇 김모(53) 씨의 왼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속 선박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7호〉

중부일보 발행인 이 강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5년 3월 11일자 19면 『택시운송사업 승인 대가 돈받은 2명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수원지검 수사과는 10일 택시운송사업 승인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00000 의장 조모(70) 씨와 월드컵회장 제조업체 (주)00상사 00위원 예모(54·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현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8호〉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차 판 암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5년 3월 8일자 5면 『거짓 자수 장면에서 ‘NG’』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올직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 강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남편 김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00 휴게소 000 00 이모(35) 씨가 직원 김모(21) 씨와 함께 000 수익금을 입금하기 위해 인근 농협으로 향하던 이씨의 싼타페 차량을 뒤따라가 지수삼거리 건널목에서 훔친 오피러스 승용차로 추돌사고를 낸 다음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리던 김씨를 밀어내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를 낸 다음 안에서 현금을 챙겨서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아내 지씨와 함께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79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2월 12일자 『히로뽕 투약 30대 긴급체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진주시 O동 자신의 모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0g을 받아 00에 O

○○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0호〉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차 판 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5년 2월 14일자 5면 『필로폰 투약 주점주인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자 1명한테서 구입한 필로폰 ○○○g을 ○○에 ○○○는 등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1호〉

경남매일 발행인 박 태 홍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매일 2005년 2월 14일자 7면 『필로폰 상승 투약 주점 주인 철창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진주시 ○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4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g을 받아 ○○에 ○○ ○○는 등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2호〉

경남신문 발행인 김 상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5년 2월 14일자 23면 『자기 술집에서 히로뽕 투약』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진주시 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〇〇〇g을 받아 〇〇에 〇〇〇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3호〉

경남일보 발행인 김 홍 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5년 2월 14일자 15면 『상습 마약투약자 체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초 시내 모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〇〇〇g을 받아 〇〇에 〇〇〇는 등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4호〉

전주매일 발행인 이 대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주매일 2005년 2월 18일자 7면 『필로폰 투약한 30대 덜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〇〇동에 위치한 모 여관에서 판매책인 이모 씨에게 구매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건네 받은 필로폰 〇〇〇그램을 〇〇에 〇〇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5호〉

경기매일 발행인 장 성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매일 2005년 2월 21일자 15면 『생아편 상습흡연 외국인근로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마약 판매책인 ○○은 중간 공급책인 ‘○○’라는 이란인으로부터 지난해 2월경부터 1년에 걸쳐 서울시 ○○구 ○○○역 근처에서 약 24회에 걸쳐 ○○○그램 상당의 생아편을 ○○○만 원 가량(그램당 ○○○○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은 김포시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램당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흡연자인 우즈벡 및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들은 1년에 걸쳐 ○○으로부터 구입한 생아편을 ○○에 ○○ ○을 가해 ○○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생아편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천연마약인 아편의 구입가격과 사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6호〉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차 판 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5년 2월 25일자 5면 『e런 마약밀매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마약 공급책 리모

(43·수배)씨 등 2명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직접 한국 마약 밀매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다음 카페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를 광고해 지역별 판매책을 모집한 후 필로폰(g당 ○○만 원)과 엑스터시(○당 ○만 원)를 주문받아 국제 특급 우편이나 국제 항공 택배로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g 단위로 포장해 중국어 교재 책 속에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회 투약분 중국산 필로폰 ○○○○g과 엑스터시 ○○정을 밀매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구입가격을 적시하고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을 추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7호〉

경남일보 발행인 김 흥 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5년 2월 25일자 15면 『국제 사이버 마약밀매단 적발』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후 이들은 필로폰 1g이상 거래할 지역별 판매책을 모집해 국내 판매가격의 ○분의 ○수준인 ○g에 ○○만 원, 엑스터시 ○정당 ○만 원에 국제특급우편이나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국내 판매책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마약류

구입대금을 국내 환치기 계좌로 입금받은후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게 1~10g 단위의 소량을 두꺼운 OO에 넣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필로폰 0000g(0000회 투약분)과 엑스터시 00정을 밀매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구입가격을 적시하고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을 추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8호〉

국제신문 발행인 노 기 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국제신문 2005년 2월 25일자 6면 『인터넷으로 히로뽕 국제밀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6촌간인 이씨 형제는 인터넷으로 히로뽕 판매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부터 다음카페, 클럽 게시판 등에 히로뽕과 엑스터시 구입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지난 1월 중순까지 중국산 히로뽕 0000g과 엑스터시 00정 등 모두 0000만 원어치를 국내 고객에게 팔아온 혐의다. 이씨 형제는 구입자가 나타날 경우 먼저 히로뽕 0회 투약분 000g을 샘플로 우송해 진품임을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모집책을 늘려간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구입가격과 필로폰의 1회 투약분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89호〉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차 판 암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5년 3월 1일자 5면 『공짜로 받은 필로폰 투약 50대 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30분께 진주시 OO면 자기 자취방에서 마산시 OO동 OO초교 앞 길가에서 모 씨로부터 공짜로 필로폰 000g을 받아 000에 00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복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0호〉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김 기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북매일신문 2005년 2월 21일자 9면 『〇〇 공무원 투신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9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〇〇청 2층 야외 휴게실 바닥에서 〇〇 공무원 배모(52·대구 〇구 〇〇동)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경찰은 배씨가 지난 1월 31일 〇〇〇 〇〇실 〇〇〇〇담당업무로 발령받아 근무해 오다 업무에 불만이 많았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여보 미안하오’라는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미뤄 〇〇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담당업무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1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2월 21일자 3면 『공무원 처지비관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9일 오전 8시25분께 대구시 〇구 〇〇 〇동 〇〇에서 〇〇〇〇실 〇〇 〇급 공무원 배모(51·〇구

〇〇동) 씨가 6층 옥상에서 2층 야외 휴게실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숨진 배씨가 ‘여보, 미안해’라는 짧은 메모를 남긴데다 6년 전부터 최근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으로 미뤄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2호〉

영남일보 발행인 성 낙 오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2월 19일자 27면 『공무원 유서 남기고 투신』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9일 오전 8시 25분쯤 대구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에서 〇〇〇〇실 〇〇〇급 공무원 배모 씨(51·대구시 〇구 〇〇동)가 6층 옥상에서 2층 야외 휴게실로 떨어져 숨졌다. ...중략... 경찰은 이날 배씨가 ‘여보, 미안해’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6년전부터 최근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으로 미뤄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나 근무처·소속 부서·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 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3호〉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5년 2월 23일자 6면 『부인 폭행치사 혐의 40대 공무원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께 충북 ○○군 ○○면 ○○리 이모(57·○○) 씨 집 창고에서 이씨의 동생(42·6급 ○○○)이 숨져있는 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함께 지내는 동생이 없어 주변을 살피다 창고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동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자 직업과 거주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4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5년 3월 2일자 7면 『아파트 7층서 추락 30대 경찰관 숨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일 새벽 2시 50분께 광주시 ○○구 ○○동 H아파트 화단에서 ○○○○경찰청 ○○과 소속 문모(39) 경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문씨의 선배 김모(47·광주시 ○구 ○○동) 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문씨가 최근 진급문제로 괴로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과 실족사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5호〉

조선일보 발행인 방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3월 2일자 A14면 『펄펄끓는 솥물에 투신』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28일 낮 12시40분쯤 경북 ○○시 ○구 ○동 ○○○○○○ ○○○○공장에서 ○○○○부 직원 이모(49)씨가 쇠물줄(래들)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중략… 경찰은 이씨가 자살 직전인 이날 오전 납품과 관련해 ○○○○ ○○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자살과 관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6호〉

부산일보 발행인 김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부산일보 2005년 3월 2일자 32면 『쇠물 운반기에 투신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28일 낮 12시40분께 ○○○○ ○○○○ 공장에서 이 회사 ○○○○부 직원 이모(48) 씨가 쇠물 운반기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고 당시 작업을 하지 않아 쇠물은 거의 없었으나 내부 온도가 섭씨 1천도에 가까워 시신은 모두 불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오전 납품과 관련해 회사 ○○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변진술에 따라 감사 내용과 자살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7호〉

전국매일 발행인 박 중 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5년 3월 3일자 9면 『회사일로…○○○직원 장비에 투신』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28일 낮 12시 40분께 경북 ○○시 ○구 ○○○ ○○○○○○ ○○○○공장에서 직원 이모 씨(48·○○○○부)가 섭씨 1천도가 넘는 쇠물을 퍼 옮기는 장비인 ‘래들’에 뛰어들어 숨졌다. …중략… 장비 물품 담당자인 이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실에 불려가 물품 소모와 관련,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8호〉

충남일보 발행인 박 영 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남일보 2005년 3월 3일자 10면 『펄펄끓는 솥물에 투신. 〇〇〇 40대 납품 감사 받은 직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28일 낮 12시40분쯤 경북 〇〇시 〇구 〇동 〇〇〇〇〇 〇〇〇〇공장에서 〇〇〇〇부 직원 이모(49) 씨가 〇〇〇(〇〇)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99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5년 3월 5일자 4면 『‘왕따’에 꺾인 여축구 유망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여자실업축구 유망주가 1년 가까이 동료의 집

단 따돌림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시 〇구 〇〇동 B모텔 202호에서 〇〇시청 여자축구선수인 최모(여·21·〇〇시 〇〇면)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 박모(36)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최씨는 어머니 박모(53) 씨에게 “동료가 괴롭혀 힘들다. 정말 미안해. 엄마”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입단한 딸이 평소 ‘감독이 편애한다며 동료가 괴롭힌다’라는 말을 자주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연봉 2천 700만 원의 〇〇〇〇〇〇 〇〇로 뛰며 오빠(25)의 대학학비는 물론 집 생활비까지 챙기며 한 가정의 가장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속팀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100호〉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스포츠조선 2005년 3월 7일자 23면 『〇〇-〇〇 〇〇〇 여자 〇〇 자살. 체중 문제로 출전 못해 고민...숙소 출입문에 목 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산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25·사진)가 숙소 출입문 개폐 완충장치에 〇〇

○으로 ○을 ○○ 숨겨있는 것을 ○○○ 직원과 ○○ 관리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유서엔 “편히 쉬고 싶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 다음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 하늘 높이 날고 싶다. 체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질책 뿐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체중 감량과 냉혹한 승부의 세계의 비정함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는 서울에서 여상을 졸업한뒤 지난 2002년 9월 ○○○○○○ ○○로 데뷔했으나 ○○ 때문에 자주 출전하지 못해 통산 59전1승, 2착 2회를 기록하다 지난해 1월 ○○-○○ ○○○으로 내려갔는데 ○○이 더 늘어나 모의경주에도 3차례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성명·나이·직업·소속팀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방법 및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 제2005-101호〉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이 정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스포츠투데이 2005년 3월 7일자 17면 『○○○ ○○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에서 활약 중인 여성○○ ○○○ 씨(26·사진)가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시 ○○구 ○○동 ○○○○○○공원 숙소에서 ○○○가 ○을 ○ 숨겨 있는 것을 ○○관리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체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질책뿐이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성명·나이·직업·소속팀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102호〉

경남신문 발행인 김 상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5년 2월 24일자 23면 『2년간 1천만여 원 뺏겨 10명 학교가는게 ‘공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들은 돈에서부터 손목시계, 교복, 화장품, 의류, 모자 등 자신들이 필요하면 닥치는 대로 빼앗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과 ○○ 등을 수십차례 ○○했다. 특히 운동부 소속인 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을 때릴 경우 ○○차례 ○○○으로 ○○ 거의 ○○○을 만들면서 피해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들은 일부 피해 학생의 ○○○에 화장지를 감아 ○○를 만들어 ○을 ○○○, ○○○ ○에 ○○ ○○○짜리 ○○을 손에 ○○ 하는

등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학대행위를 했다. 이 학생이 ○○○을 참지 못해 손을 빼면 ○○를 수차례 ○○○ 등 중학생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포악성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력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을 ○○○로 ○○ 것은 물론이고 학교 화장실로 끌고온 동급생을 때릴 듯이 위협해 겁을 잔뜩 먹게 한 뒤 ○○를 ○○ ○○ 부위의 ○에 ○을 ○○ ○○○ 등 이들의 잔인함은 고문의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3. 21.

〈시정권고 제2005-103호〉

국민일보 발행인 노 승 숙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5년 3월 12일자 7면 『이통사 과장 15억 수뢰 홍청망청』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동통신사 전 간부가 새로운 ‘대박사업’으로 꼽히는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10억대 뇌물을 받아 홍청망청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변모(39) 씨는 2003년 7월부터 이동통신회사 ○사의 ○○○사업부 ○○으로 재직하면서 ○사 등 16개 성인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 13억 6,000만 원어치의 금품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04호〉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내일신문 2005년 3월 11일자 22면 『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비리 드러나』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 업체 선정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사 ○○○사업부 변모(39) 전 ○○을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이동통신사 ○○○사업부 ○○으로 근무하면서 성인 ○○○ 업체 16곳으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하거나 콘텐츠를 유리하게 게재해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 원어치 금품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설·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05호〉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5년 3월 11일자 7면 『이통사 전 OO 성인콘텐츠사서 15억 수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콘텐츠 업체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이동통신사 OO사업부 변모(39) 전 OO을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콘텐츠 서비스업체 선정 2차심사자인 O이동통신사 OOO사업부 OO으로 재직하면서, 공급업체 선정이나 특정 콘텐츠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 상단메뉴에 올려주는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16개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혼경력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제27조 4항, 형법 제

〈시정권고 제2005-106호〉

서울신문 발행인 채 수 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5년 3월 12일자 6면 『성인 콘텐츠 사업 ‘뇌물도 대박’』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콘텐츠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15억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O사 전 OO 변모(39)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중략... 변씨는 2003년 7월 O사 OO사업부 OO을 맡으면서 16개 콘텐츠 공급업체로부터 “누드동영상 등 성인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 원 어치의 금품과 1억 3,000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변씨는 2003년 7월 이혼한 뒤 OO구 OO동의 보증금 5,500만원, 월세 150만 원 짜리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혼경력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제27조 4항, 형법 제

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1항·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07호〉

한겨레 발행인 정태기

결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겨레 2005년 3월 12일자 9면 『휴대폰 성인콘텐츠 ‘자릿세’로 15억원 뜯었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텔레콤 ○○사업부 ○○ 변아무개(39)씨를 구속하고, 변씨에게 금품을 건넨 콘텐츠 제공업체 ㄷ사 대표 박아무개(3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200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유료 부가서비스의 하나인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콘텐츠사업부 과장으로 있으면서 16개 업체로부터 140차례에 걸쳐 모두 14억95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명칭·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08호〉

한국일보 발행인 이종승

결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5년 3월 12일자 8면 『벗은 영상 납품대가 15억 원 벗겨먹었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콘텐츠업체 선정 과정에서 15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유명 이동통신업체 ○사의 ○○○사업부 변모(39) 전 ○○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사 ○○○사업부 ○○으로 재직해 온 변씨는 D사 등 16개 성인콘텐츠업체들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 원어치의 금품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09호〉

매일경제 발행인 장대환

결정

귀하가 발행하는 매일경제 2005년 3월 12일자 A31면 『이통사 전 간부 뇌물만 15억』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사의 ○○○○사업부 전 ○○ 변모 씨(39)를 구속했다. ...중략... 변씨는 2003년 7월부터 ○사 ○○○사업부 ○○으로 재직하면서 D사 등 16개 성인콘텐츠업체들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 원어치 금품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0호〉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국경제 2005년 3월 12일자 A31면 『모바일 성인 콘텐츠에도 ‘검은 돈’』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동통신업체 전 직원이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10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사의 ○○○사업부 변모 전 ○○(39)을 성인○○○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1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3월 11일자 『‘성인 콘텐츠사업 악취’... 이통사 전 간부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사의 ○○○사업부 변모(39) 전 ○○을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7월부터 ○사의 ○○○사업부 ○○으로 재직하면서 D사 등 16개 성인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청

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천만 원 어치의 금품과 1억 3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2호〉

영남일보 발행인 성 낙 오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3월 11일자 26면 『이동통신사 전 간부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이동통신업체의 모바일 유료 성인콘텐츠사업이 새로운 ‘대박사업’으로 떠올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통신사 전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사의 ○○○사업부 변모 전 ○○(39)을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하였으나 전 근무처인 이동통신업체의 영문이니셜·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3호〉

경남신문 발행인 김 상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5년 3월 16일자 23면 『상가 돌며 6차례 금품 훔쳐』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마산중부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5·무직·마산시 ○○면 ○○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4호〉

울산매일 발행인 정 길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울산매일 2005년 3월 21일자 15면 『○○○○○ 대표 횡령혐의 긴급체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는 (주)○○○○○의 김○○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중략... 한편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 지난 1973년에 창립된 수(水)처리 핵심인 ○○○○설비업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소속 회사의 명칭·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5호〉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5년 3월 21일자 19면 『도예사업조합 이사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수원지검 특수부 박규은 검사는 20일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행사에 기획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협

동조합 ○○ 장모(46·광주시) 씨를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6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3월 23일자 5면 『고객사망 보험금 착복 금고 간부 3명 붙잡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8천만원대의 고객사망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시 ○○면 소재 ○○○○○○ 간부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간부인 정모(39·○○동) 상무, 손모(32·○○면) 대리, 장모(35·여) 부장 등 3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객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보상금 8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함께 소재지를 면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7호〉

전국매일 발행인 박 중 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5년 3월 23일자 8면 『“떼먹을게 따로있지”』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영천서에 따르면 ○○시 ○○면에 위치한 ○○○○○ 대리 손모 씨(32), 상무 정모 씨(39), 부장 장모 씨(여·35)는 지난 99년 9월 ○○시 ○○면에 살고 있는 이모 씨가 ○○○○○○에서 우리가족상해공제에 가입해 매월 7만 5,680원의 공제금을 불입중 2002년 1월 이모 씨 및 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연합회에서 아들 김모 씨에게 지급하라고 송금해준 공제보상금 1억 9,000여만 원을 수령 김모 씨에게는 1억 1,500만 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600여만 원을 각각 2,500만 원씩 나누어 착복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함께 소재지를 면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8호〉

국민일보 발행인 노 승 숙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5년 3월 24일자 6면 『○○대 ○○감독 사전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인천지검 특수부는 23일 대학 ○○부에 스카우트해주고 입학 후 사후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 ○○감독 주모(5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학부모 박모(46) 씨 등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과 소속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19호〉

인천일보 발행인 황 호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5년 3월 24일자 19면 『○○대 ○○감독 사전영장 청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〇〇대학교에서도 〇〇특기생 선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 수사과는 23일 〇〇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〇〇대 〇〇감독 주모(5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과 소속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0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5년 3월 31일자 15면 『〇〇시청 신용카드 훔친 〇〇〇〇 기소』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의정부지검 전문부(최광태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로 〇〇시청 〇〇〇〇〇〇 현모(22)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월 14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〇〇시 〇〇〇〇〇〇에 퇴근 후 몰래 들어가 시청 소유의 신용카드 2매를 훔친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1호>

경기일보 발행인 신 창 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5년 3월 31일자 5면 『〇〇〇〇 퇴근 후 카드절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의정부지검 전문부 최광태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로 〇〇시청 〇〇〇〇〇〇 현모 씨(2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14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〇〇시 〇〇〇〇〇〇에 퇴근후 몰래 들어가 기관 소유 신용카드 2매를 훔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2호〉

투데이뉴스 발행인 추 교 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투데이뉴스 2005년 3월 31일자 5면 『시청 신용카드 훔친 0000 구속기소』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의정부지검 전문부 최광태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할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로 00시청 000000 현모(2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월 14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00시 000000에 퇴근후 몰래 들어가 00 소유의 신용카드 2매를 훔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3호〉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5년 4월 2일자 6

면 『출소 두달만에 여고생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청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박모(19·00시 00면 00리) 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31일 새벽 5시경 대전역에서 배회중이던 여고생 A(17·인천 00구)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청주 00구 00동 모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성폭력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됐던 박군은 지난 1월 30일 출소한 뒤 두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소년법 제6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4호〉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5년 3월 12일자 19면 『‘대낮’ 방범망도 뚫렸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1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00동 00읍은

방에 손님을 가장한 2인조 강도가 침입, 근무 중이던 여직원 김모 씨(26)의 손발을 묶은 뒤 금고에서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 1억 원어치(주인 주장)를 털어 달아났다. ...중략... 업주 황모 씨(48)는 “당시 가게 안에는 다이아몬드 세트 등 귀금속 3억원 어치가 있었으며 범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간과 여직원을 결박 후 곧바로 금고를 텅 것으로 보아 치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나 피해 금은방은 000 인근의 네거리에 위치하는데 도로변에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들은 이를 의식치 않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운영하거나 고용되어 있는 점포의 영문이니셜과 함께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고 그 위치를 추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5호〉

전남일보 발행인 박 기 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남일보 2005년 3월 17일자 6면 『담배 훔치려 구멍가게 할머니 살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영암경찰은 16일 70대 구멍가게 주인을 살

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00군 00면 00리 이모(77)씨의 구멍가게 안방에서 이씨의 아내 김모(74)씨를 발로 밟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이씨도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뒤 담배 30갑과 현금 4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6호〉

영남일보 발행인 성 낙 오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3월 19일자 23면 『생활비 벌려 필로폰 판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 주부 변모 씨(30)는 올 1월 운전기사 이모 씨(40)에게 필로폰 00g을 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씨와 부인 윤모 씨(40)는 구입한 필로폰을 이모 씨(40)와 방모 씨(40)에게 판매하고 이들과 함께 000 000로 올 3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상습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구입가격

과 사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7호〉

강원일보 발행인 최 승 익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강원일보 2005년 3월 30일자 5면 『마약투약 고모 조카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10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에서 윤모(51·동해시) 씨와 함께 필로폰 000g을 0000 00 0개에 나눠 투약하는 등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혐의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8호〉

중부매일 발행인 박 성 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5년 3월 30일자 6면 『치료감호중 필로폰 투약 피의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께 부산시 진구 서면의 모 당구장에서 김모 씨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00g을 받아 다음날인 22일 오후 9시께 김해시 내동 소재 황도방에서 00 00 000 를 이용해 00 00에 00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29호〉

충북일보 발행인 이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5년 3월 15일자 2면 『제천 000000협회장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제천시 00면 000000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모(45) 씨가 지난 12일 오후2시 00군 00면 0

〇〇리서 목장 울타리에 목매 숨졌다. 경찰은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단체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0호〉

경인매일 발행인 신 연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5년 3월 29일자 19면 『〇〇시 〇〇과 〇급 직원 ‘임용 한달만에... 투신’, 연일 야근 격무 치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〇〇시 〇〇과 〇급 공무원 조〇〇(33) 씨가 투신자살을 기도한 것은 지난 24일 저녁. 2000년 처음 〇〇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사표를 내기까지 1년 3개월여의 공직경험이 있다지만, 다시 시험에 합격해 지난달 25일 첫 출근을 했으니 꼭 한달만의 일이다. 무엇이 이 앞길 창창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퇴직후 물류창고 잡부일을 마다 않던 키 181cm의 건장한 청년, 부모 말 한번 거역한 적 없는 아들, 자주 만나주지 못하는 여자친구에게 늘 미안해 하던 이 공무원의 죽음앞에 동료 직원들은 한결같이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원 많기로 소문난 〇〇시에서도 격무부서로 꼽히는 〇〇과에 배치된 조씨는 임용 이

후 단 하루도 제 시간에 퇴근해 보지 못했다. 전국 최고속도의 개발지인 〇〇, 〇〇의 〇〇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일과를 민원인과의 전쟁으로 보내고 정작 본래의 업무는 야근으로 돌려야 하는 초인적 일정이 되풀이됐다. 조씨의 ‘초과근무 확인서’. 인사직후 부서 송·환영식이 있던 3월 9일을 제외하곤 평균 밤 11시30분이 그의 퇴근시간이다. 사고전날인 23일엔 밤 12시 30분, 21일은 오전 1시30분, 11일 오전 1시48분... 책임감이 강한 조씨였지만 동료들은 그가 가끔씩 “업무가 미숙하다”, “동료들에게 자기일까지 떠넘겨야 한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한다. 사고 당일엔 형과의 통화에서 이를 전 어머니 생신을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기도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나이와 함께 생존 당시의 근무처·소속 부서·직급 등을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2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1호〉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기호일보 2005년 3월 30일자 3면 『파출소 근무 경찰 서고서 권총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28일 오전 6시 24분께 ○○경찰서 ○○파출소 서고에서 박모(33) 순경이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 신음하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2호〉

우리일보 발행인 김 석 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5년 3월 30일자 23면 『권총 자살기도 순경, 끝내 사망』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8일 오전 6시 30분께 ○○경찰서 ○○치안센터(○○파출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으로 머리를 쏘 자살을 기도했던 박모(33) 순경이 끝내 사망했다. ...중략... 박 순경은 최근 몇 년간 사귀어오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 헤어진 뒤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3호〉

인천일보 발행인 황 호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5년 3월 30일자 19면 『파출소서 순경 권총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8일 오전 6시 24분쯤 ○○경찰서 ○○파출소 서고에서 박모(33) 순경이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신음하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4호〉

전국매일 발행인 박 중 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5년 3월 30일자 9면 『신변비관에... 우울증에』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8일 오전 6시24분께 경기 ○○경찰서 ○○파출소 서고에서 박모(33) 순경이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 신음하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숨졌다. ...중략... ○○파출소장 조모(55) 경위는 “박 순경이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사건당사자가 항소, 박 순경이 검찰과 법원에 불려가며 심적부담을 토로했었고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료경찰과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박 순경이 신변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4. 25.

〈시정권고 제2005-135호〉

뉴시스 발행인 최 해 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5년 4월 18일자 『야한 비디오 무반응 여직원 불법 치료 후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원 여직원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뒤 성폭행한 ○○○○ 원장 정모 씨(60)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께 ○○구 ○○동의 ○○○○ 사무실에서 여직원 서모 씨(22)에게 ○○ ○○○를 보여주고 반응이 없자 “불임 증세니 치료해 주겠다”며 서씨의 ○○에 ○○○를 이용, ○○○○○ 등을 ○○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나이·직위와 함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및 제9조 1항 위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36호〉

경기매일 발행인 장 성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매일 2005년 4월 20일자 15면 『‘나 한의사였는데...’ 유인해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고양경찰서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장애인재활시설인 ○○원을 운영하면서 유명 한의원을 사칭, 치료를 빙자해 성폭행한 ○○○○ 원장 정모(60)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구 ○○동 소재 ○○○○ 보육사 사무실에서 ○○원 여직원 서모(22·여) 씨에게 자신이 과거 유명 한의사인데 혈산이 막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불임이 된다는 ○○에 ○을 놓고 반항하는 피해자 얼굴을 때리면서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나이·직위와 함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37호〉

도민일보 발행인 권도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도민일보 2005년 4월 20일자 15면 『○○원장 치료 빙자 직원 강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고양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장애인재활시설인 ○○○○을 운영하면서 유명한의원 경력을 사칭, 자신의 ○○원 여직원에게 불임치료를 빙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여직원을 폭행, 강간

한 ○○○원장 정모 씨(60세)를 강간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 보육사 사무실에서 ○○원 여직원 서모 씨(22세·여)에게 자신이 과거 유명 한의사인데 혈산이 막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불임이 된다는 ○을 ○○하야 복부에 침을 놓고 ○○에서 ○○○이 피어야 한하면서 ○○를 자극하고 ○○○○○○를 ○○했다. 그러나 서씨가 특별한 반응이 없자 ○○○○○○을 보여주며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했다. ...중략... 또한 정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 40분경 고양시 ○○구 ○○동 ○아파트 ○○○○ 유모 씨(48세·여)를 알뜰시장을 미끼로 유인, ○○동 ○○초교 인근 공터 자신의 차량 내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나이·직위와 함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밝히고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성·나이 및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및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38호〉

시대일보 발행인 김중욱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시대일보 2005년 4월 20일자 15

면 『재활원 여직원에 불법 치료후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원 여직원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뒤 성폭행한 ○○○○ 원장 정모 씨(60세)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낮 12시께 ○○구 ○○동의 ○○○○ 사무실에서 여직원 서모 씨(22세)에게 ○○ ○○○를 보여주고 반응이 없자 “불임 증세니 치료해 주겠다”며 서씨의 ○○에 ○○ ○를 이용, ○○○○○ 등을 ○○하고 강제로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나이·직위와 함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및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39호〉

시민일보 발행인 정 우 영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시민일보 2005년 4월 19일자 18면 『○○원 원장이 여직원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원 여직원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뒤 성폭행한 ○○○○ 원장 정모 씨(60)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께 ○○구 ○○동의 ○○○○ 사무실에서 여직원 서모 씨(22)에게 ○○ ○○○를 보여주고 반응이 없자 “불임 증세니 치료해 주겠다”며 서씨의 ○○에 ○○○를 이용, ○○○○○ 등을 ○○하고 강제로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나이·직위와 함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및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0호〉

영남일보 발행인 배 성 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5월 4일자 25면 『다방 종업원 20명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대구시 ○구 ○○○동 ○다방에 공중전화로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온 김모 씨(여·22)를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쳐 다방 여종업원 20여명을 상대로 금품 300여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1호〉

영남일보 발행인 배 성 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4월 16일자 23면 『○○타워 관리비 11억 횡령』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남)는 15일 대구시 ○구 ○○동 ○○타워즈 빌딩 ○○업무를 맡고 있는 ○○타워즈 전 ○○○ 성모 씨(62)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2001년 9월부터 2004년 말까지 ○○타워 ○○○○○을 맡으면서 빌딩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 등 1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하였으나 전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2호〉

부산일보 발행인 김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부산일보 2005년 4월 18일자 8면 『재개발 ‘뒤틀돈’ 위원장 등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부산 ○○구 ○○동 일대 부지 1만 8천여평을 재개발해 아파트 1천 500여세대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제)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박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제)로 ○○○○○ 배모(5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조합의 명칭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3호〉

호남투데이 발행인 박 양 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호남투데이 2005년 4월 19일자 14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어업용 면세유를 자신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어민이 해경에 검거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관내 수협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수급사범을 내사한 결과 유모(40세·○○군 ○○면 ○○리) 씨를 적발해 사기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4호〉

광남일보 발행인 박 행 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남일보 2005년 4월 29일자 18면 『학원장이 수강료 빼돌려 도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광주의 한 영어학원장이 학원생들이 납부한 수

천만 원의 학원비를 갖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략... 28일 광주서부경찰은 김모 씨(42)가 광주시 ○구 ○○동 ○○○○○○ 어학원장 박모 씨(37)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의자가 운영하던 학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5호〉

한겨레 발행인 정 태 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 17면 『‘한 방’ 호기심마저 끊어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우리나라 히로뽕 의존 환자들은 대개 여러 명이 주사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C)형 간염 같은 전염병에 걸리기 쉽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 ... 그는 또 “○○를 할 때 남자는 7~8초, 여자는 12~14초 정도 ○○○이 오는데 ○○○을 처음 사용해서 했을 때에는 무려 13~14분”이라며 “이러니 한번 ○○○ ○○의 ○을 보게 하면 평생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략... 히로뽕은 ○○○보다 더 ○○하고 ○○○○도 길다. 한번만 사용해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이다. ...중략... ○○약물은 크게 ○○○와 ○

○○을 잃게 하는 약으로 나눈다. ○○○는 ○○○이라고 하며 일단 먹은 뒤에는 ○○이 극적으로 커진다. ...중략... ○○○을 잃게 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이라는 것이 있다. 먹은 뒤에 수시간 동안 ○○ ○○을 하지 못하게 한다. 대개 이런 약을 ○○과 같이 음주할 때 ○○ ○○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드시 음료수나 술을 본인이 개봉해서 먹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진과 함께 마약류의 명칭과 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6호〉

국민일보 발행인 노 승 속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5년 4월 12일자 8면 『학업성적 부진 비판 과학고 학생회장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 모과학고 학생회장이 성적을 비판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오전 2시쯤 서울 ○고 3학년 ○모(17) 군이 자신이 살던 서울 ○○동 한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군은 학교에서 지난달 23일 전체 학생 대표로 선출될 정도로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군 가족과 친구 등은 경찰에서 “최근 학업 성적 부진으로 스

트레스를 받아 무척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나이와 함께 생존 당시 학생회장으로 재학중이던 과학고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시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7호〉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5년 4월 11일자 8면 『공부·음악·외모 ‘팔방미인’ 과학고 학생회장. 성적비판 투신자살 ‘충격’』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0일 새벽 2시쯤 서울 ○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17) 군이 자신이 살던 서울 ○○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군은 이날 밤 “어머니가 깨어 있으면 제가 못잔다”고 말한 뒤,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자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군은 2학년 재학중이던 지난해 수시 전형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조기입학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 반면 ○군의 친구들은 유명대학에 연이어 입학했기 때문에 그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크게 낙심했었다고 ○군의 친구들은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 성의 영문이니셜·나이와 함께 생존 당시 학생회장으로 재학중이던 과학고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시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8호〉

조선일보 발행인 방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4월 12일자 A8면 『“엄마 미안해...” 성적비관 과학고 학생회장 투신』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과학고 3학년 ○모(18) 군은 10일 0시쯤 ○○구 ○○동 ○아파트에서 수학 문제집을 프린트한 복사물 뒷면에 이렇게 썼다. ...중략... 이 군은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내신 1% 이내의 학생들만 합격한다는 ○○과학고의 학생회장이었다. 이 학교 ○○○ 교장은 “○군은 항상 밝았고 교우관계가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군은 183cm가량의 큰 키에 잘생긴 외모, 이른바 ‘얼짱’으로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탤런트 이○○ 씨와 함께 S물산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다. ...중략... 이처럼 ‘팔방미인’인 ○군은 최근 성적을 비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의 담임 김모 교사는 경찰에서 “○군이 교내에서 1~2학년때 줄곧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3월 모의고사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군의 ○○과학고 동기생 135명 중 103명

은 2학년까지 마치고 조기에 KAIST, 포항공대에 진학했다. 현재 남은 고3생은 32명뿐이다. ○군의 B중학교 동창인 L군은 “○○과학고에 진학한 중학 동창 5명 중 ○군을 제외한 4명이 모두 2학년만 마치고 KAIST와 포항공대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군이 그만큼 심리적인 박탈감에 시달렸다는 얘기다. ○군은 ○○○○○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인 어머니의 외동아들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나이와 함께 생존 당시 학생회장으로 재학중이던 과학고의 명칭과 부모의 직업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49호〉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안 형 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강원도민일보 2005년 4월 20일자 3면 『젊은 목숨 앓아간 건설경기 불황』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장비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30대 굴삭기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11시 45분쯤 ○○시 ○○면 ○○리에 거주하는 지모(35) 씨가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김모(79)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지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0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5월 10일자 4면 『환경미화원 음독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8일 밤 11시40분께 포항시 O구 OO동 모 아파트에서 OOOO 환경미화원인 어모(52)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씨가 평소 채무관계로 힘들어했다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말에 따라 채무부담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의 명칭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1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5월 11일자 4면 『스님 나무에 목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OO시 OO면 OO사 OOs님(56·법명 OO)이 사찰 인근 소나무에 끈으로 목매 자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법명·나이·보직과 함께 생존시 소속 사찰의 명칭과 소재지를 면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2호〉

월간조선 발행인 이 상 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5년 4월호 530~550면 『사람에겐 생의 갈망이 있지만 사의 갈망도 있다. 나는 사의 갈망을 선택했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를 읽어 봤냐구

요. 「한니발」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를 먹어 본 거구요. ...중략... 내가 ○○의 ○○○○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아나. 인터넷으로 ○○○○을 찾아봐도 ○만 나온 건 없길래 병원에 가서 ○○을 ○○○로 찍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을 찍어 달라니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요즘 웬만한 병원은 ○○○ 기록을 ○○로 ○○○ 하면 주는데 그걸 다시 내가 ○○○○○○○으로 옮겨 놓고 확대해 가면서 ○○의 ○○○○를 공부(?)한 것이다. 그 결과 칼을 두어 번만 대도 ○○○를 ○○ 정도로 숙련(?)이 되더라...”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3호〉

세계일보 발행인 사 광 기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세계일보 2005년 4월 22일자 A6면 『무서운 여고생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구 A양 집에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중학교 동창생인 C(16·고1)양의 옷을 강제로 ○○ 뒤 ○○, ○○ 등에 ○○○ 등을 넣고 ○○○○○해 학교 친구들과 함께 ○○○ 협의다. A양 등은 또 ○○○○에 ○○ ○○○○으로 C양의 ○○○와 ○ 등에 수차례 ○○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

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4호〉

조선일보 발행인 방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4월 22일자 A8면 『여고생, 조폭영화 찍듯...』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으로 ○○○ ○○○, ○에 달군 ○○○으로 ○○○ ○○○, ○○○로 ○○와 ○○ ○○○... 광기(狂氣) 어린 가학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인천 시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었다. ...중략... 이들은 ○○○ ○○○로 달군 ○○○으로 K양의 ○○ ○를 지졌다. 다음에는 ○○○으로 ○○○와 ○○을 ○○○ 시작했다. K양은 고통으로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지만 더 맞을까봐 비명을 삼켜야 했다. 이들은 K양을 벌거숭이로 만들더니 ○○○와 ○○ ○○○으로 ○○를 ○○○○ ○○○○○로 ○○까지 찍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

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5호〉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스포츠조선 2005년 4월 22일자 31면 『‘갑없는 여고생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 인천시 O구에 있는 A양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양(16·고1)의 O을 OO로 OO OO로 만든 뒤 OO, OO 등에 OOO 등을 넣고 OOOOOO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다. A양 등은 또 OOOO에 달근 OOOOO으로 C양의 OOO, O 등에 수차례 OO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6호〉

경기신문 발행인 정 충 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5년 4월 22일자 15면 『‘무서운’ 여고생』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O구에 있는 A양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16·고1)양의 O을 OOO OO OO로 만든 뒤 OO, OO 등에 OOO 등을 넣고 OOOOOO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다. A양 등은 또 OOO O에 달근 OOOOO으로 C양의 OOO, O 등에 수차례 OO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7호〉

경인일보 발행인 우 제 찬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5년 4월 22일자 23면 『여고생들이 성고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 시께 인천시 ○○구 A양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16·고1)양의 ○을 ○○○ ○○ ○○로 만든 뒤 ○○·○○ 등에 ○○○ 등을 넣고 ○○○○○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다. A양 등은 또 ○○ ○○에 달근 ○○○○으로 C양의 ○○○, ○ 등에 수차례 ○○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8호〉

대한일보 발행인 김 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한일보 2005년 4월 22일자 8면 『‘무서운’ 여고생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 시께 인천시 ○구에 있는 A양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16·고1)의 ○을 ○○○ ○○ ○○로 만든 뒤 ○○·○○ 등에 ○○○ 등을 넣고 ○○○○○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다. A양 등은 또 ○○○○에 달근 ○○○○으로 C양의 ○○○, ○ 등에 수차례 ○○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59호〉

투데이뉴스 발행인 추 교 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투데이뉴스 2005년 4월 22일자 5면 『‘무서운’ 여고생들』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3 시께 인천시 ○구에 있는 A양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16·고1)양의 ○을 ○○○ ○○ ○○로 만든 뒤 ○○, ○○ 등에 필기구 등을 넣고 ○○○○○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다. A양 등은 또 ○○○○에 달근 ○○○○으로 C양의 ○○○, ○ 등에 수차례 ○○을 입히고 A양의 콘택트 렌즈 분실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공표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60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진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5월 23일자 15면 『고령 할머니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버이날 000에 거주하는 77세 고령의 할머니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성폭행한 피의자(○모·51세) 마약전과 13범 0000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 ○씨는 5월 8일 03:30경 00동 000번지 피해자(박모·77세·여)의 주거지 내에서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를 강제추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성·나이와 함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의자의 성·나이·직업 및 피해자의 이웃집에 거주한다는 사실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 제2005-161호〉

뉴시스 발행인 최해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5년 6월 3일자 『'빌린 돈 갚으라'며 딸 성폭행』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김씨 등은 조모 씨(45)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경 서울시 ○○구청 앞에서 목모 씨(44)를 ○○시 ○동 자신들의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가 익일 오전 2시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달 29일 오후 11시경 ○○시 ○○구 ○씨의 딸(19) 집에 찾아가 ‘아버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비록 성폭행 피해자의 주소를 구까지만 공표하였으나 희성 및 피해자와 부친의 나이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위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62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진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5월 17일자 15면 『“하도급 주겠다” 사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시흥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하도

급 업체에 골조 및 토목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한 시행사 대표 이모(47)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 ○○○○재개발 아파트 시행사인 ○○○○○ 대표 이모(47) 씨는 시행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 대표 이모 씨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건설 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재개발 아파트 ○○○ 김모 씨와 공모해 조합원 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 또는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회사·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5. 23.

〈시정권고 제2005-163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5년 5월 21일자 4면 『○○수협 ○○○ 등 2명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완도경찰은 20일 양식장용 사료값을 허위로 부풀려 비싼 값에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수협 ○○○ 김모(58) 씨와 수협 전 ○

○ 양모(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 박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고향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차모(50·수배중) 씨를 중국산 생선 사료 수입업자로 선정한 뒤, 수입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 서류를 꾸며 조합비 5억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전·현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4호〉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5월 23일자 4면 『○○수협○○○ 구속』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완도경찰서는 21일 수입사료 가격을 시가보다 부풀려 조합에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완도수협 ○○○ 김모 씨(58)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김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9년 5월 차모 씨(48)를 중국산 사료 수입업자로 선정하고 차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사료 3천13t을 시중가보다 2배가량 높은 10억 9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5호〉

전국매일 발행인 박 중 필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5년 5월 25일자 9면 『조합공금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조합 공금으로 매입비용을 충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 ○○ ○○○ 재건축 ○○○ 박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월 자신의 부인과 처제·모친의 명의 등으로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구입한 뒤 2003년 11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조합공금에서 아파트 대금으로 8억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

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6호〉

서울일보 발행인 박 진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6월 1일자 15면 『손님 가장 보살집돈 훔쳐』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보살집에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 침입,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 후 귀금속 등을 강취한 피의자 김모 씨(37세·○구 ○○동 ○○번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7호〉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김 기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북매일신문 2005년 5월 27일자 18면 『대낮 실험에 복면 강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6일 낮 12시 20분께 대구시 ○○구 ○○동 ○○실험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사무실에 있던 박모(여·25)씨 등 여직원 2명을 사제권총으로 위협, 현금 1천여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대구은행 수표 등을 빼앗은 뒤 여직원들을 대형 철제금고에 가둔 뒤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8호〉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5년 6월 10일자 19면 『2인조 강도 주유소 습격 흥기위협 현금털어 도주』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9일 오전 4시 20분께 ○○시 ○○면 ○○리 ○주유소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흥기를

들고 들어와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30만 원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유소 종업원 정모(36) 씨는 경찰에서 “주유소 밖에서 30대 초반 남자 2명이 이야기를 주고 받다 그중 한명이 갑자기 흥기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뒤 금고 안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69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5월 20일자 4면 『말다툼하던 부부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8일 오전 10시께 ○○시 ○○면 ○○리 홍모(41·농업) 씨 집에서 홍씨와 아내 전모(37) 씨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홍씨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시간만인 오후 10시께 모두 숨졌다. 홍씨 어머니 서모(75) 씨는 아들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며느리가 먼저 음독한 뒤 아들이 뒤를 따랐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0호〉

동남일보 발행인 김 공 가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동남일보 2005년 5월 20일자 5면 『부부 말다툼 끝 음독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부부가 말다툼 끝에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10시께 ○○시 ○○면 ○○리 홍모(41·농업) 씨 집에서 홍씨와 홍씨 아내 전모(37) 씨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밤 10시께 모두 숨졌다. 홍씨 어머니 서모(75) 씨는 “아들 내외가 말다툼을 하면서 머느리가 먼저 음독한 뒤 아들이 뒤를 따랐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1호〉

부산일보 발행인 김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부산일보 2005년 5월 23일자 9면 『○○매립장 ○○○ 공사 ○○○○ 목매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21일 낮 12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H여관 객실에서 ○○ 쓰레기매립장 ○○○ 처리시설 공사 ○○○○인 손모(59·서울 ○○구 ○○동) 씨가 선풍기 전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여관업주 김모(41)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자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2호〉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김 기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북매일신문 2005년 5월 24일자 19면 『가정불화 부부 숨진채 발견』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2일 오후 4시30분께 ○○군 ○○면 ○○리 ○○저수지에서 김모(여·44·○○군 ○○면 ○○리)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데에 이어 인근 야산에서 김씨의 남편 현모(53) 씨가 나무에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과 함께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3호〉

한라일보 발행인 강 영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한라일보 2005년 5월 25일자 4면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검찰조사 후 목매 숨져』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4일 오후 1시 55분쯤 ○○시 ○○동 모 주택 지하실에서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뇌물수수과 관련된 검찰조사를 받았던 ○○○군청 ○○○ 공무원 고모 씨(44)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양모 씨(42)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담당이던 고씨는 “부인과 애들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검찰조사를 받은 후 뇌물수수에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4호〉

시대일보 발행인 김 중 옥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시대일보 2005년 5월 19일자 19면 『고령의 할머니 성폭행 피의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김씨는 지난 8일 피해자 박모 씨(77세·여)의 주거지 내에서 박씨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를 ○○○ ○○○을 ○ ○ ○ ○○ ○○○ 반항하는 박씨의 양팔을 세계 잡아 ○ ○○고 ○○를 꺼내 ○○로 ○○ 하고 ○○에 ○○○을 집어넣어 ○○○ 등 강제추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6. 28.

〈시정권고 제2005-175호〉

경인매일 발행인 신 연 석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인매일 2005년 7월 7일자 11면 『동료 종업원 강간한 20대 남자 구속영장』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연수경찰서는 6일 게임랜드 오락실에서 함께 일하는 여종업원을 강간한 피의자 최모 씨(22·○○구 ○○동)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 ○○동 소재 ○게임랜드 오락실 종업원으로 2005. 6. 23.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모 씨(25세·여)등 오락실 직원들과 함께 ○○○동 S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김씨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김씨의 집까지 따라가 팔을 붙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고 침대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21조 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1항 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76호〉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2005년 6월 29일자 19면 『○○수협 여직원 1억 7천만 원 횡령』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시수산업협동조합 ○○○○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1억 7천여만 원의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수협에 따르면 ○○동 ○○○○에서 근무해온 이모 씨(32)는 그 동안 고객의 정기에탁금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 및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77호〉

인천일보 발행인 황 호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5년 6월 17일자 19면 『주유소 강도 사건 잇달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6일 오전 4시 20분쯤 ○○군 ○○읍 ○○리 ○○주유소에 흥기를 든 30대 남자가 침입, 종업원 박모(27) 씨를 위협한 뒤 금고에서 3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시 ○○동 ○○○○○ 충전소에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30대 피한 1명이 흥기를 들고 침입, 종업원 이모(67) 씨를 위협해 손과 발을 결박한 뒤 현금 2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범인은 1시간 뒤인 이날 오전 2시 30분쯤 1차 범행장소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읍 ○○리 ○○○○○주유소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종업원 최모(29)씨를 위협, 손목을 전깃줄로 결박하고 현금과 수표 등 모두 305만 원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소재지를 동이나 리까지 밝히고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이 침입, 숙직실에서 잠자고 있던 주인 김모(35) 씨를 흥기로 위협, 끈으로 김씨의 양손을 묶고 금고 속의 현금 9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쯤 ○○군 ○○읍 ○○리 ○○주유소에 흥기를 소지한 30대 남자가 침입, 종업원 박모(27) 씨를 위협한 뒤 금고 안에 들어있던 3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중략... 이밖에도 지난 9일 오전 4시 20분쯤 평택시 ○○면 ○○리 ○○주유소에도 모자를 쓴 3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침입, 종업원 정모(63)씨를 흥기로 위협, 3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소재지를 동이나 리까지 밝히고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79호〉

경향신문 발행인 조 용 상

〈시정권고 제2005-178호〉

인천일보 발행인 황 호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5년 6월 18일자 15면 『또 주유소에 흥기 강도』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 17일 오전 5시 15분쯤 수원시 ○○구 ○○동 ○○주유소에 선그라스를 착용한 30대 초반의 피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5년 7월 11일자 10면 『30대, 한밤 공기총난사·방화』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한밤에 공기총으로 주민에게 총상을 입히고, 가옥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벌인 뒤 달아났던 30대 남자가 도주 20여시간 만에 검거됐다. ...중략... 김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전북 ○○군 ○○면 ○○마

을 임모 씨(66) 집에 찾아가 임씨 부부에게 공기총을 쏘 상처를 입히고, 방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후 달아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0호〉

서울신문 발행인 채 수 삼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5년 7월 11일자 7면 『‘묻지마’ 공기총 난사·방화』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대 남자가 마을주민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하고 빈집에 불을 지른 뒤 차량을 훔쳐타고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19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 중략... 김씨는 이어 오전 3시쯤 10여km 떨어진 ○○군 고수면 ○○리 임모(63) 씨 집에 들이닥쳐 공기총을 마구 쏘 잠자던 임씨 부부의 오른팔과 이마에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1호〉

연합뉴스 발행인 장 영 섭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연합뉴스 2005년 7월 10일자 『30대 공기총 난사 방화... 주민 3명 다쳐』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대 남자가 10일 새벽 공기총으로 잇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히고 빈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경계령을 내리고 추격하고 있다. ... 중략... 범인은 이어 새벽 3시께 이 곳에서 10여 km 떨어진 ○○군 ○○면 ○○리 모 마을 임모(63) 씨 집에 들이닥쳐 공기총을 마구 쏘 임씨 부부의 오른팔과 이마에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2호〉

뉴시스 발행인 최 해 운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뉴시스 2005년 7월 10일자 『공기총 난사 사건 용의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오늘 새벽에 벌어진 전북 OO의 공기총 난사사건과 관련한 용의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 붙잡혔다. ...중략... 김씨는 10일 오전 2시 57분께 전북 OO군 OO면 OO리 OO마을 임모 씨(66)의 집에 침입, OOmm O공기총(OO)을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임씨를 쏘고 총소리에 깬 임씨의 부인 김모 씨(65)에게 다시 총을 쏘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3호〉

대한일보 발행인 김 정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대한일보 2005년 7월 11일자 8

면 『30대 공기총 난사 마을주민 3명 다쳐』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대 남자가 10일 새벽 공기총으로 잇따라 마을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히고 빈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경계령을 내리고 추격하고 있다. ...중략... 범인은 이어 새벽 3시께 이곳에서 10여km 떨어진 OO군 OO면 OO리 모 마을 임모 씨(63) 집에 들이닥쳐 공기총을 마구 쏘 임씨 부부의 오른팔과 이마에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4호〉

동남일보 발행인 김 공 가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동남일보 2005년 7월 11일자 5면 『30대 남, 공기총 난사·방화』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대 남자가 10일 새벽 공기총으로 잇따라 마을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히고 빈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경계령을 내리고 추격하고 있다. ...중략... 범인은 이어 새벽 3시께 이 곳에서 10여 km 떨어진 ○○군 ○○면 ○○리 모 마을 임모(63) 씨 집에 들이닥쳐 공기총을 마구 쏘아 임씨 부부의 오른팔과 이마에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5호〉

새전북신문 발행인 김 현 중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5년 7월 11일자 1면 『한밤 공기총 난사-방화. 범인 검거』, 6면 『새벽 공기총 난사-방화 3명 부상』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의 용의자로 뒤쫓던 김모 씨(34·○○군 ○○면 ○○리)를 붙잡았으며 조사를 벌인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새벽 2시 56분께 이 곳에서 16km 떨어진 ○○군 ○○면 ○○리 친구 부모의 집에 찾아가 임씨(66)와 부인 김모 씨(65)에게 공기총 4발을 난사해 임씨가 오른 팔 3곳에 총탄이 박히고 김씨는 이마에 부상을 입었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의자 및 피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6호〉

전라일보 발행인 유 춘 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라일보 2005년 7월 11일자 6면 『공기총 난사-방화범. 경찰 19시간만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과 ○○지역을 돌며 공기총을 난사하고 방화를 일삼은 30대가 사건발생 19시간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중략... 김씨는 이어 오전 3시께 훔친 1톤 포터트럭을 이용, ○○군 ○○면 ○○리 ○○마을로 이동해 임모 씨(66)의 집에 침입, 잠자던 임씨와 아내 김모 씨(65)에게 총 4발을 발사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

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7호〉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민일보 2005년 7월 11일자 15면 『총기 난사 사건 범인 추적』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지난 10일 새벽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시내와 ○○군 농가를 오가며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략… 이어 새벽 3시께 ○○군 ○○면 ○○리 ○○마을로 간 범인은 임모 할아버지(64)와 김모 할머니(63)의 집에 침입해 각각 1발씩 발사해 오른팔과 후두부에 상처를 입힌 후 물고 온 트럭에서 휘발유를 꺼내 집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8호〉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5년 7월 11일자 7면 『공기총 난사 방화 3명 부상』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0일 새벽 ○○과 ○○을 오가며 잇따라 ○○○을 쫓아 마을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히고 빈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30대 용의자가 검거됐다. △사건발생=이날 새벽 2시 55분께 ○○시 ○○동 ○연립주택에서 10여km 떨어진 ○○군 ○○면 ○○리 ○○마을 임모 씨(63) 집에 임씨의 아들 친구인 용의자 김모 씨(34)가 갑자기 들어와 공기총을 쏘는 바람에 임씨 부부가 오른팔에 총상을 입었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89호〉

전주매일 발행인 이 대 수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전주매일 2005년 7월 11일자 4

면 『30대 남자 ‘공기총 난사’ · ‘방화’』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흙친 차를 타고 정읍과 고창 지역을 오가며 주민들에게 잇따라 공기총을 발사해 총상을 입히는 등 빈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략… 또 이 남자는 새벽 2시 56분께 최초 사고 지점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군 ○○면 ○○리 ○○마을 임모 씨(63)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부부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하는 등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방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0호〉

충남도민일보 발행인 이 춘 구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남도민일보 2005년 7월 12일자 10면 『공기총 난사 사건 용의자 검거』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10일 새벽에 벌어진 전북 고창의 공기총 난사

용의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 붙잡혔다. …중략… 김씨는 10일 오전 2시 57분께 전북 ○○군 ○○면 ○○리 ○○마을 임모 씨(66)의 집에 침입했다. 그리고 0.5mm 공기총(외탄)을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임씨를 쏘고 총소리에 깬 임씨의 부인 김모 씨(65)에게 다시 총을 쏘 부상을 입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 피해자 부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지의 마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1호〉

영남일보 발행인 배 성 로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영남일보 2005년 7월 13일자 6면 『‘용감한’ 이웃』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유통업을 하는 이○○ 씨(41·대구시 ○○구 ○○○가)는 12일 오전 출근을 하기 위해 대문을 나서는 순간 20여m 떨어진 이웃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와 골목길로 달아나고 뒤이어 30대 주부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쫓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홍모 씨(20)가 김모 씨(여·35)의 집 출입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침입, 현금 24만 원이 든 손지

갑을 훔쳐 달아나다 김씨에게 들키자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200여m를 뒤쫓아 갔으나 순간적으로 범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화물차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숨어 들어간 반대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해 기다리고 있다가 기어 나오는 범인을 붙들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지요.”...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검거자의 성명과 나이 및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3조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2호〉

조선일보 발행인 방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6월 20일자 A8면 『입대전 실연... 정신병력은 없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오늘의 감정상태: 슬픔.’ 김○○(22·사진) 일병이 싸이월드 미니홈피 초기 화면에 남긴 글귀다. ...중략... 김 일병은 경기도에 있는 Y대에 다니다 작년 12월 7일 입대해 올 1월 15일 현재의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비무장지대 GP에는 지난달 7일 투입됐다. ...중략... 김 일병은 군 입대 전인 2004년 5~6월에 실연(失戀)을 했다. 그는 “넌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는지... 잠들어 있어도 술을 마셔도 내 가슴엔 오로지 너만 있

는가 보다”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미니홈피에 올려 놓았다. 가족은 부모와 누나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충기난사사건 피의자의 얼굴사진 및 개인 홈페이지 주소와 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조 1항 및 2항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3호〉

매일신문 발행인 조 환 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매일신문 2005년 6월 23일자 35면 『부인 제삿날 아들 다툼 80대 노인 극약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군 ○○면 ○○리 변모(86) 씨가 마을뒤 ○○○ 기도원 인근에서 극약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주민과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변씨가 지난 20일 저녁 부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최근 매매한 토지 대금의 분배문제를 두고 자식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의 제사를 못지내자 다음날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

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4호〉

충북일보 발행인 이 상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5년 7월 1일자 5면 『신병비관 50대 대청호 투신』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30일 오전 10시59분께 ○○군 ○○면 ○○리 ○○교에서 육모(52·여·○○군 ○○면 ○○리) 씨가 50m 높이의 다리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장소를 보도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1항 1·2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5호〉

경남매일 발행인 박 태 훈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경남매일 2005년 7월 6일자 15면 『80대 노인 음독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4일 오후 7시께 ○○시 ○○면 ○○마을 김(80세)모 할머니가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한모(45) 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5일 오전 3시 45분께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하는 마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6호〉

광주일보 발행인 백 인 호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광주일보 2005년 7월 6일자 6면 『면사무소 직원 음독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음독 자살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군 ○○면사무소 ○○ 담당(○급)인 조모(45)씨가 자신의 집에서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담당 업무·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 제2005-197호〉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결 정

귀하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7월 6일자 5면 『면사무소 ○○ 직원 음독 자살』 제목의 기사 중 아래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도내용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음독 자살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20분께 ○○군 조모 씨(45)의 집에서 구례군 ○○면사무소 경리 담당(○급)인 조씨가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졌다. …중략… 지난 91년 행정 9급으로 특채된 조씨는 2000년 3월부터 이 면사무소 ○○담당으로 일해 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담당 업무·직급·입사 시기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1호 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5. 7. 22.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새 법 시행에 따라 자체심의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제3자에 의한 신청심의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 기사 가운데 실명 및 주소가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생각하여 「○○」으로 표기 했습니다.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안 건 번 호 : 2005자심199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라일보사
대표이사 유 춘 택

주 문

(주)전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7월 19일자 6면 『돈 안주자 아버지 폭행. 화 안풀려 집에 불까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18일 익산경찰서는 금전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김모 씨(26)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0분께 ○○시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불을 질러 어머니 김씨(68)와 이를 말리던 이웃 양모 씨(60)에게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0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사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주)전북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7월 19일자 19면 『만취상태 아버지 폭행』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만취상태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오후 7시 40분께 ○○시 ○○면 ○○리 김모(25)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이모(61·여) 씨, 이웃주민 양모(66·여) 씨 등 3

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1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대표이사 백 인 호

주 문

(주)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6일자 4면 『골프장 캐디 폭행 ○○○○ 입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화순경찰은 5일 골프장에서 도우미(캐디)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행 정모(50)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은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순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팀의 경기자가 친 공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든 데 격분, 뒤 팀 캐디 김모(여·30) 씨의 왼쪽 넓적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

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2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타임스신문사 (남도일보)

대표이사 박 성 호

주 문

(주)광주타임스신문사가 발행하는 남도일보 2005년 8월 6일자 11면 『골퍼, 캐디 폭행 누구 잘못』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화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5시10분께 지인들과 함께 화순 ‘클럽 900’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다른 팀에서 친 공이 날아와 맞을 뻔했다”며 욕설과 함께 뒷팀 캐디 김모 씨(30·여)의 왼쪽 넓적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행 정○○(50)을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뿐만 아니라 근무처와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3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부일보사

대표이사 임 재 율

주 문

(주)중부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6일자 15

면 『경찰관이 고급차 강도짓』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현직 경찰관이 낀 차량강도범 5명이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5일 차량을 사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고급승용차를 가로챈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서 소속 봉모(51)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4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라일보사

대표이사 유 춘택

주 문

(주)전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9일자 6면 『택시기사-손님 요금문제 주먹질』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8일 전주중부경찰서는 택시요금문제로 서로 폭력을 휘두른 ○ 웨딩홀 ○○○ 김모 씨(49·전주시 ○○○동)와 택시운전사 박모 씨(53·전주시 삼천동)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동 ○○공원에서 중 ○○동 ○웨딩홀까지 박씨의 택시를 탄 뒤 웨딩홀에 도착하자 “안에 들어가 택시요금 4,100원을 가

져오겠다”고 말하자 운전사 박씨가 “윗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는 말에 격분, 폭력을 휘두르고 박씨도 이에 맞서 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근무처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5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매스컴 (광주매일)

대표이사 김 원옥

주 문

(주)광주매스컴이 발행하는 광주매일 2005년 8월 10일자 15면 『선원 폭행혐의 ○○ 호송 도중 투신 실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폭행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던 중 바다에 투신, 실종됐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전 0시 50분께 ○○군 ○○면 ○○도 북동 25마일 해상에서 ○○선적 젓새우잡이 어선 ○○○○호 ○○ 김모(38) 씨가 해경 P-92정 갑판에서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운항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6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광일보사

대표이사 박양주, 이 철

주 문

(주)전광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0일자 4면 『폭력혐의 조사받던 30대 ○○ 투신』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폭행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던 중 바다에 투신, 실종됐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신안군 ○○면 ○○도 북동쪽 4km 해상에 계류중이던 목포 선적 ○○t급 ○○○○○호 ○○ 김모 씨(38)가 바다로 투신, 실종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운항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7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호남매일)

대표이사 구 양 술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8월 10일자 5면 『‘경찰 과잉조사’ 논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선상폭력 혐의로 해상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던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바다로 투신, 실종됐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선원이 경찰의 과잉조사를 주장,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신안군 ○○면 ○○도 앞 200m 해상에 계류중이던 목포선적 ○○t급 ○○호 ○○ 김모 씨(38)가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위 및 운항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8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일보

대표이사 김 흥 치

주 문

(주)경남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7월 13일자 15면 『30대 극약 마시고 숨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30대 ○○○이 ○○을 비판해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12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면 ○○리 김모(37) 씨가 지난 11일 자신의 집 마당에 쓰

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강모(61)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도 하지 못한 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신병을 ○○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미혼인 사실과 정신질환 병력 및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09

언 론 사 : 주식회사 통영시민신문 (연합신문)
대표이사 김 중 규

주 문

(주)통영시민신문이 발행하는 연합신문 2005년 7월 14일~20일자 19면 『30대 극약마시고 숨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30대 ○○○이 ○○을 비관해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12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면 ○○리 김모(37) 씨가 지난 11일 자신의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강모(61)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도 하지 못한 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일단 ○○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미혼인 사실과 정신질환 병력 및 주소를 리까

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0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 한산신문
대표이사 허 도 명

주 문

(주)주간 한산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7월 16일자 9면 『○○비관 30대 노총각 음독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을 앓았던 30대 ○○○이 자신의 ○○을 비관, 음독 자살했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김모(37·○○면 ○○리)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강모(61)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김씨가 20년 전 ○○○○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도 하지 못한 채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해온 점으로 미뤄 자신의 ○○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미혼인 사실과 정신질환 병력 및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1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표이사 조 준 호

주 문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9일자 7면 『업무중 사고후유증 30대 경찰관 투신』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업무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치료중이던 30대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2시쯤 대전시 ○○구 ○○동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11층에 사는 김○○ 경장(37·대전 ○○경찰서 ○○계)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이모 씨(5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한편 김 경장은 지난 1997년 경찰에 입문, 처와 아들(5)을 두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과 나이 뿐만 아니라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2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부매일
대표이사 박 성 규

주 문

(주)중부매일이 발행하는 2005년 8월 9일자 3면 『현직경찰관 신병비관 투신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현직 경찰관이 신병을 비관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2시

께 대전시 ○○구 ○아파트내에 주차된 승용차 위에 이 아파트 11층에 사는 대전 ○○경찰서 ○○계 소속 김모 ○○(37)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3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빛일보
대표이사 변 주 연

주 문

(주)한빛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9일자 3면 『신병 비관 30대 경찰관 목숨 끊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업무 도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경찰관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2시께 대전 ○○구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한 승용차 위에 이 아파트 11층에 사는 대전 ○○경찰서 ○○계 소속 김모 ○○(37)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4

언 론 사 : 주식회사 내일신문

대표이사 장 명 국

주 문

(주)내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8월 10일자 21면 『○○○ 과장 투신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8일 밤 9시 30분쯤 ○○○ ○○○○○과장 장모(44) 씨가 서울 ○○구 ○○동 ○아파트의 11층 집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장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말 없이 뒷 베란다로 걸어가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5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타임스신문사(남도일보)

대표이사 박 성 호

주 문

(주)광주타임스신문사가 발행하는 남도일보 2005년 8월 12일자 19면 『어느 60대 여성의 기구한 삶』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이혼 후 피붙이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던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5분께 광주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김모 씨(68·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노모 씨(63·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거주 아파트의 명칭·동·층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8. 29.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6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일보사

대표이사 박 성 렬

주 문

(주)호남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0일자 15면 『새우잡이 ○○ 투신 실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새우잡이 어선 ○○이 폭행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던 중 바다에 투신 실종됐다. 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신안군 ○○면 ○○도 북동쪽 4km해상에 계류 중이던 목포 선적 ○○급 ○○○○○호 ○○ 김모 씨(38)가 바다로 투신 실종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하였으나 직위 및 운항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7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대표이사 백 인 호

주 문

(주)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6일자 6면 『아들이 부모 살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자신을 꾸짖은 부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경찰은 지난 11일 광주시 ○○구 ○○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구청 ○○○○○○ 양모(60) 씨 부부 살해범으로 큰 아들 양모(31·무직)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 아버지의 전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8

언 론 사 : 주식회사 송백(전남매일)
대표이사 신 정 욱

주 문

(주)송백이 발행하는 전남매일 2005년 8월 16일자 5면 『살해 용의자 아들 검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구 ○○동 양모 씨(61) 부부 살해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들 부부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경찰서는 15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양씨의 아들 양모 씨(31)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략… 숨진 양씨는 지난 6월 ○○구청에서 ○○○으로 퇴직했으며, 범인인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 아버지의 전 근무처·직위·퇴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19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
대표이사 허 정 도

주 문

(주)경남도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23일자 5면 『술값 받으러 따라간 50대 폭행 당한 후 실종… 수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22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박모(35·군북면 월촌리) 씨와 문모(41·○○면 ○○리) 씨 등 2명이 ○○읍 ○○리 ○○○주점에서 1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이중 4만 원만 지불한 뒤 나머지는 외상을 요구했다. 이에 같은 건물에 사는 이모(50·부산시 덕포동) 씨가 술값을 받아오겠다며 이들의 차량에 타고 따라 나선 뒤 실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술값을 외상한 박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추궁한 결과 이씨를 차에 태워 범수면 윤내리 도로상에서 흥기로 때린 뒤 인근 배수로에 던지고 달아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0

언 론 사 : 함안군민신문

대표 유 출 자

주 문

함안군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8월 31일자 5면 『“술값 몇푼에 살인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함안경찰서는 술값을 받으러 온 이모(50·부산시 ○○동) 씨를 타이어 교환용 레버로 머리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면 ○○리 배수장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5·농업·○○면 ○○리) 씨와 문모(41·농업·○○면 ○○리) 씨에 대한 현장검정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박모(35·농업·○○면 ○○리) 씨와 문모(41·농업·○○면 ○○리)

씨 등 2명은 ○○읍 ○○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일부 금액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자 같은 건물에 사는 이모(50·부산시 ○○동) 씨가 술값을 받아오겠다며 차량을 타고 따라 나선 뒤 이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과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1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김 대 성

주 문

(주)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26일자 5면 『동료 ○○ 흥기로 찌른 40대 긴급체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김모 씨(44)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남방 120마일 해상에서 ○○선적 ○○○호에서 ○○을 하다 동료 ○○인 최모 씨(20)가 작업지시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흥기로 최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 것。」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과 소속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2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9일자 7면 『고객 돈 수천만 원 훔친 40대 구속영장』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전주중부경찰서는 8일 손님의 금품을 훔친 선모(41·여)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OO동 OOO홀에서 손님 이모(39) 씨와 술을 먹은 뒤 인근 모텔로 유인, 잠을 자는 이모 씨의 지갑에서 현금과 수표 150여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총 2천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업소의 영문 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3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9일자 12면 『간 큰(?) 술집 여주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전주중부경찰서는 8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선모 씨(41·여·전주시 OO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OO동 OO홀에서 손님 이모 씨(39·전주시 OO동)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들어가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씨가 잠든 틈을 노려 지갑속에 있던 현금과 수표 154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238만 원을 절취한 혐의.」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업소의 영문 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사실 등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4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민일보
대표이사 한 상 원

주 문

(주)한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9일자 1면 『OO홀 여주인 손님 돈 줄행랑』 제목의 보도에 대

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전주중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홀을 찾은 남성 고객과 여관에 간 뒤 고객이 잠든 틈에 금품을 훔친 ○○홀 여주인 선모 씨(41·전주시 ○○동)에 대해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동 ○○○홀에서 이모 씨(39·전주시 ○○동)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동침한 뒤 이씨가 잠든 사이 이씨의 지갑 속에 든 현금과 수표 등 154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선씨는 또 지난 2004년 8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남성 고객을 유혹해 5회에 걸쳐 88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업소의 영문 이니셜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사실 등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5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구신문사(대구일보)
대표이사 이 태 열

주 문

(주)대구신문사가 발행하는 대구일보 2005년 9월 10일자 3면 『청도 노인 살해범 검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달 27일 발생한 청도군 ○○면 70대 노파 살해사건 범인이 사건발생 12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도경찰서는 9일 청도군 ○○면 ○○리 이모(39)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6

언 론 사 : 주식회사 신경북일보(경북일보)
대표이사 김 중 규

주 문

(주)신경북일보가 발행하는 경북일보 2005년 9월 14일자 19면 『재개발아파트 로열층 빼내 웃돈 없어 팔아 부당 이득』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기가 좋은 로열층 13가구를 빼돌려 돈을 받고 팔거나 지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사업 시행사 ○○○○ 고모(40) ○○와 분양대행사 ○○○○○ 강모(46) ○○, 분양전문 프리랜서 석모(49) 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빼돌린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 대표 이모 씨(여·43) 등 중개업자 5명과 시공사 삼환기업 대리 박모 씨(35) 등 모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 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7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순복

주 문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26일자 8면 『마약사범 2명 영장』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창원서부경찰서는 25일 필로폰 〇〇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최모(42·마산시 〇〇읍) 씨와 동거녀 이모(32·마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9일 마산시 자산동 모다방에서 필로폰 중간판매상 성모(47) 씨에게서 필로폰 〇〇g(시가 〇〇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중 〇〇〇g을 안모(42) 씨에게 판매했으며, 지난 21일 동거녀 이씨의 집에서 이씨와 함께 필로폰 〇〇〇g을 〇〇에 〇〇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8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표이사 이용범

주 문

(주)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6일자 15면 『인터넷 마약유통 급속 확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엑스터시(Ecstasy, 일명 도리도리)와 텍스트로메트르판제제(Dextromethorphan Hbr, 일명 러미나)등 신종마약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마약이 〇〇 〇〇으로 일반 〇〇〇까지 〇〇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마약 유통업자는 〇〇〇을 이용,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〇〇 〇〇를 이용해 마약을 공급하고 있고 실제로 도내 일부 대학생들이 이를 구입 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5일 인터넷 D모, N모 등 국내 유명 〇〇 〇〇의 〇〇와 〇〇〇에는 ‘각종 약(수면, 최음) 판매 합니다’란 이름으로 엑스터시와 러미나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버젓이 게시해놓고 있었다. 각종 싸이트에 ‘최음제 살 사람’이라는 ID로 글을 올린 판매업자는 ‘엑스터시와 러미나 〇〇알을 〇〇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가격을 밝히며 영업 중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약품은 엑스터시와 러미나 외에도 〇〇〇(발정제), 〇〇〇〇〇〇〇(최음제), 〇〇〇〇(수면제)을 혼합한 제품이며 가격은 〇회 사용량 〇〇만 원, 액체형(일명 〇〇)은 〇〇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의 판매수단은 〇 〇〇〇를 이용한 〇〇로 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분노출을 우려해 구매희망자가 이 〇〇로 〇〇〇〇를 남기면 〇〇〇〇〇으로 〇〇를 〇〇방식을 사용해 유통하고 있었다. …중략… 현재 〇〇〇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는 “제품 복용 후 〇〇〇분이면 〇〇이 〇〇해지고 〇〇〇분이 지나면 〇〇이 〇〇진다”며 〇〇이 〇〇에게 〇〇을 〇〇시킬 〇〇과 〇〇할 〇〇까지 〇〇해주고 있어 일

반인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으로 인해 제2의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엑스터시, 텍스트로메토르관제제 등 마약류의 종류·구입가격·구입방법·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29

언 론 사 : 주식회사 씨엔엠 (동양일보)
대표이사 조 성 훈

주 문

(주) 씨엔엠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5년 8월 15일자 3면 『○○대 전 ○○팀장 자살… 학교측 충격』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군 ○○읍 야산에서 전 ○○대학 ○○팀장 박모 씨(43)가 나무에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윤모 씨(3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17일 대학의 재단이 바뀌면서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돼 이에 따른 심적 부담감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임 재단시절 대학의 ○○팀을 맡아 살림을 꾸려왔다. 경찰은 최근 박씨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스트레스 등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퇴직 시기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0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북미디어 (충북일보)
대표이사 이 상 훈

주 문

(주)충북미디어가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5년 8월 15일자 3면 『○○대 전 ○○팀장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13일 낮 2시40분께 ○○군 ○○읍 ○○○리 야산에서 ○○대학 전 ○○팀장 박모(43·청주시 ○○구 ○○동) 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윤모(33·청주시 ○○구 ○○동)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숨진 박씨는 그동안 ○○대학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법인이 사장 등 운영자가 바뀌면서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해왔으며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인 김모 씨가 박씨가 보직변경이 된 후 일을 힘들어 했고 지난 12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함에 따라 박씨가 보직이 변경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퇴직 시기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1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대표이사 변 주 연

주 문

(주)한빛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5일자 3면 『○○대학 ‘침통’』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대학(충북 ○○군 ○○읍 ○○리 산4)이 전임 이사장과 ○○팀장의 잇단 자살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고 ○○○ 이사장이 재단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목숨을 끊은지 7개월여만에 전임 경리팀장이던 박모 씨(43·청주시 ○○구)가 학교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대학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중략… 평소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박씨가 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재단이 바뀌면서 보직이 ○○○과장으로 변경된데 따른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 업무스트레스에 비중을 두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것도 박씨에게 큰 심적인 압박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전임 재단시절 10여년간 ○○분야 일을 맡는 등 ○○대학 ○○·○○분야 실무통으로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퇴직 시기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2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한겨레)
대표이사 정 태 기

주 문

(주)한겨레신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5년 8월 15일자 11면 『부대 선임병 구타 호소 의경, 탈영 22일만에 숨진채 발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대에서의 구타를 호소하던 의경이 전입한 지 한 달도 못 돼 탈영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경찰서는 14일 “○○○○○○ 오아무개(22) ○○이 지난달 21일 탈영한 뒤 12일 강원도 강릉시 ○○○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 ○○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첫 외출 때 오 ○○에게서 ‘선임병들이 가슴을 짓이기는 등 생활이 너무 힘들어 부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오 ○○은 부대 전입 뒤 2주간의 적응기간이 지나자마자 탈영해 가혹행위를 당할 상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3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중 승

주 문

(주)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5일자 A13면 『가혹행위 호소 의경 탈영후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대 내 구타를 호소하던 의경이 탈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서울 ○○경찰서에 따르면 ○○서 소속 ○○○○○ 오모(22) ○○이 지난달 21일 탈영한 뒤 이달 12일 강원 강릉시 정동진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오 ○○ 유가족은 “탈영 전인 지난달 17일 첫 외출을 나와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을 짓이김 당하는 부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으나 달래서 들여보냈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4

언 론 사 : 주식회사 강원일보사
대표이사 이종승

주 문

(주)강원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5일자 5면 『탈영 의경, 20일만에 정동진서 목매』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대 내 구타’를 호소하던 ○○○○○ ○○이 입대 한 지 한달도 못 돼 탈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서울 ○○경찰서는 “○○○ 소속 ○○○○○ 오모(22) ○○이 7월 21일 탈

영한 뒤 지난 12일 강원도 강릉시 ○○○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 ○○의 유가족은 “탈영 전인 지난달 17일 첫 외출을 나와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을 짓이김 당하는 부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으나 달래서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복귀 후 탈영한 오 ○○을 만났다는 한 친구는 “오 ○○이 ‘부대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5

언 론 사 :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장영섭

주 문

(주)연합뉴스가 발행하는 2005년 8월 14일자 『의경 탈영 20일만에 숨진 채 발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대 내 구타’를 호소하던 ○○○○○ 의경이 입대 한 지 한달도 못 돼 탈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서울 ○○경찰서는 “○○서 소속 ○○○○○ 오모(22) ○○이 지난달 21일 탈영한 뒤 12일 강원도 강릉시 ○○○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 ○○의 유가족은 “탈영 전인 지난달 17일 첫 외출을 나와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을 짓이김 당하는 부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으나 달래서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6

언 론 사 : 주식회사 신경북일보 (경북일보)
대표이사 최 창 호

주 문

(주)신경북일보가 발행하는 경북일보 2005년 8월 27일자 12면 『운동장 철봉대 목매 숨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운동장 철봉대에 30대 남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4분께 포항시 남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운동장 철봉대에 마을 주민 신모 씨(32)가 목매 숨져있는 것을 이모 씨(2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신씨의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7

언 론 사 : 주식회사 거제타임즈
(거제통영고성타임즈)
대표이사 박 춘 광

주 문

(주)거제타임즈가 발행하는 거제통영고성타임즈 2005년 8월 26일자 6면 『60대 노인 목매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17일 오전 6시경 거제시 〇〇면 〇〇도 〇〇리 〇〇〇번지에 거주하는 김모(60세) 씨가 마을 옆 고목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김씨는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8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 순 복

주 문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12일자 8면 『통영 ‘〇〇의 집’ 목사 분신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10일 오후 8시 10분께 통영시 〇〇동 ‘〇〇의 집’에서 현직 〇〇교 목사인 이모(47) 씨가 분신자

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이날 이씨는 자신의 교회 사택 화장실에서 20l 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붓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전신 3도의 화상과 화염 흡입 기도손상으로 사망했다. 통영경찰서는 숨진 이씨가 1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분신자살 전에 처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점을 미뤄 7년 전 교회신축비용으로 대출받은 6억 원의 빚이 주요 자살원인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목사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거주하던 교회사택의 명칭과 교파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9. 26.

안 건 번 호 : 2005자심239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대표이사 변 주 언

주 문

(주)한빛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9일자 3면 『“축구부 코치, 초등생 수개월 성추행”』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에게 수개월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온 여학생이 학교차원의 개선부재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여성단체에 신고해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 모 여성단체에서 OO군 OO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L모 씨(61)를 13세 미만 청소년 성추행범으로 고발해 왔으며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점을 찾아내 조만간 L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방침이다. 충남 OO에서 지난해 O월 O일 OO초로 전학 온 K양(OO)은 식당종업원 일을 하는 OO와 OOOO O, 오빠 등 O식구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 K양은 코치 이씨의 눈에 띄었고 지난해 2학기부터 교내 곳곳에서 30여 차례 이상 성추행을 당해 왔다. ...중략... 지난 3월 23일 일기장을 검사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K양 담임 O모 교사는 학생들 성교육을 맡고 있는 보건교사와 교장에게 보고해 K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을 이니셜로 공표하였으나 나이·재학중인 학교명·담임교사의 성·전학 날짜·전 거주지·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성폭력 피의자의 성·나이·전 근무처인 학교명·직업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0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김 대 성

주 문

(주)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16일자 5면 『어선 OO·상선 OOO 입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〇〇〇 선적 어선과 〇〇〇〇급 상선 충돌사고(본지 지난 13일자 5면 보도)와 관련 어선 〇〇과 상선 〇〇〇〇〇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어선 〇〇〇〇〇〇〇〇호 〇〇 성모 씨(43)와 상선 〇〇호 〇〇항해사 스테이크(30·〇〇〇〇〇)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항 선박의 명칭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1

언 론 사 : 전국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필

주 문

전국매일(주)이 발행하는 2005년 9월 22일자 8면 『동거녀 살해 암매장 피의자가 범행 자백』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김모 씨(46)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여모 씨(40)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중 동거녀가 아들을 욕하자 이에 격분해 목줄라 살해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해 유기한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 받았다. 논산경찰서 강력2팀(팀장 박민수)은 지난달 16일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피의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줄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매장했다는 자백을 받고 사체 발굴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영장 신청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2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채수삼

주 문

(주)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6일자 5면 『직원에게 털린 〇〇〇〇〇. 〇〇기사 새벽에 사무실 돌며 범행. 〇〇연구관등 17명 260만 원 피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범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드라이버 등으로 서랍을 열고 금품을 훔쳤다. 청소를 위해 이 시간에 사무실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아는 내부자 소행인 게 분명했다. ...중략... 마침내 밝혀진 범인은 〇〇에서 〇〇〇으로 일하던 27살의 김모 씨.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〇〇〇〇 등을 점검하며 주로 새벽시간대에 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담당 업무·고용 형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3

언 론 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6일자 A8면 『OO 턴 간 큰 직원』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OOOOO 직원이 OO 사무실을 돌며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9월 초까지 OO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등 280여 만 원을 훔친 혐의로 김모(27) 씨를 24일 구속했다. OO의 OOOO 관리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5월 초 OO OOO 비서관인 송모(59) 씨의 서랍을 열어 시가 9만 원 상당의 OO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 1개를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도둑질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새벽 시간에는 청소를 위해 사무실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 새벽 5시쯤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다니며 빈 사무실 서랍을 털어 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담당 업무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4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표이사 조 준 호

주 문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8일자 6면 『신종마약 ‘스페셜 K’ 대량 밀반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동남아에서 속칭 ‘K’, ‘스페셜 K’ 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 ‘OOO’ 이 국내에 대량 밀반입된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7일 중국에서 밀수된 ‘K’ OOOg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 한 조모 씨(46) 등 3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K’ 는 국내에서 지난해 4월 외국인 교수 아들과 유학생들이 또다른 마약류와 섞어 복용하다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량반입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동물 또는 사람의 진통·마취제인 OOO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K’ 는 OOOOO 특정 부위에 작용, 다른 환각제인 OOO나 OOOO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용을 하다 사용을 OO해도 OOOO현상을 빚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스페셜 K)의 명칭·주원료·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5

언 론 사 : 주식회사 씨엔엠 (중앙일보)

대표이사 조 성 훈

주 문

(주) 씨엔엠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5년 9월 28일자 3면 『신종마약 판매조직 적발』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동남아에서 속칭 ‘스페셜 K’ 또는 ‘K’라 불리는 동물마취제의 일종인 신종마약 ‘○○○’이 국내에서 대량 반입된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7일 중국에서 밀수된 ‘K’ ○○○g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 한 조모 씨(46) 등 3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혐의로 구속했다. ‘K’는 국내에서 지난해 4월 외국인 교수 아들과 유학생들이 또다른 마약류와 섞어 복용하다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량반입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동물 또는 사람의 진통·마취제인 ○○○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K’는 ○○○○○ 특정부위에 작용, 다른 환각제인 ○○○나 ○○○○보다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스페셜 K)의 명칭·주원료·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6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도매일 (중도일보)

대표이사 김 원 식

주 문

(주)중도매일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5년 9월 28일자 5면 『‘신종마약 K’ 대량반입 첫 적발』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동남아에서 속칭 ‘스페셜 K’ 또는 ‘K’라 불리는 동물마취제의 일종인 신종마약 ‘○○○’이 국내에서 대량 반입된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7일 ○○○을 원료로 만든 ‘K’ ○○○g을 ○○○으로 밀반입, 국내에 판매하려 한 조모(46·인천 ○○구 ○○동) 씨 등 3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중략… ‘K’는 국내에서 지난해 4월 모 대학 외국인 교수 아들과 유학생들이 소량 밀반입해 ○○○○, ○○ 등과 섞어 복용하다 적발됐지만 대량반입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 또는 사람의 진통, 마취제인 ○○○을 주원료로 ○○해 ○○ 형태로 만들어진 ‘K’는 ○○○○○ 특정부위에 작용해 환각효과가 ○○○나 ○○○○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용을 하다 사용을 ○○해도 ○○ ○○을 빚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름,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스페셜 K)의 명칭·제조방법·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7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도민일보 (충남도민일보)

대표이사 이 춘 구

주 문

(주)충청도민일보가 발행하는 충청도민일보 2005년 9월 29일자 4면 『신종 마약 ‘○○○’ 국내유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속칭 ‘스페셜 K(또는 K)’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이 국내에서 대량 반입된 사실이 처음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특수부장 박경호)는 27일 ○○○을 원료로 만든 ‘스페셜 K’ ○○○○g을 밀반입, 국내에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모(46·인천 ○○구 ○○동)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중략… 국내에서 ‘스페셜 K’는 지난해 4월 모 대학 외국인 교수 아들과 유학생들이 소량 밀반입해 ○○○○, ○○ 등과 섞어 복용하다 적발됐지만 대량반입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셜 K’는 동물 또는 사람의 진통, 마취제인 ○○○을 주원료로 ○○해 ○○형태로 만든 것으로 ○○○○○○ 특정부위에 작용해 환각효과가 ○○○나 ○○○○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복용을 하다 사용을 ○○해도 ○○ ○○현상을 빚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스페셜 K)의 명칭·제조 방법·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8

언 론 사 :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장 영 섭

주 문

(주)연합뉴스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7일자 『신종마약, 국내 대량반입 첫 적발』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속칭 ‘스페셜 K(또는 K)’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이 국내에서 대량 반입된 사실이 처음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특수부장 박경호)는 27일 ○○○을 원료로 만든 ‘스페셜 K’ ○○○○g을 밀반입, 국내에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모(46·인천 ○○구 ○○동)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중략… 국내에서 ‘스페셜 K’는 지난해 4월 모 대학 외국인 교수 아들과 유학생들이 소량 밀반입해 ○○○○, ○○ 등과 섞어 복용하다 적발됐지만 대량반입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셜 K’는 동물 또는 사람의 진통, 마취제인 ○○○을 주원료로 ○○해 ○○형태로 만든 것으로 중추신경계 특정부위에 작용해 환각효과가 ○○○나 ○○○○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복용을 하다 사용을 ○○해도 ○○ ○○현상을 빚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스페셜 K)의 명칭·제조 방법·환각적 효능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49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표이사 조 환 길

주 문

(주)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0일자 4면 『추석 노인 자살 ○○서만 2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추석인 18일 오후 4시쯤 ○○군 ○○면 ○○리 이모(84) 씨가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며느리 이모(48) 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군 ○○면 ○○리 김모(77) 씨가 자녀들이 성묘를 간 사이 음독, 숨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0

언 론 사 : 주식회사 거제신문사
대표이사 김 동 성

주 문

(주)거제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9월 28일~10월 4일자 15면 『30대 주부, 목매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20일 새벽 3시 10분께 ○○읍 ○○리 ○○○○에 거주하던 윤○○ 씨(여·31)가 남편이 없는 새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부모님의 사망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과 나이뿐만 아니라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칭과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

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1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울일보사
대표이사 박 진 석

주 문

(주)서울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4일자 19면 『30대 여성 10층서 자살소동』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경 ○○시 ○○구 ○○○동 539번지 주거용 오피스텔인 ○○○○○○ 10층 창문에서 정모(33·여) 씨가 뛰어내리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중략… 정 여인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간 소방대원에 의해 끌려 내려와 자살 소동은 30여 분만에 막을 내렸다.”는 기사와 자살 시도 과정을 담은 자료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하는 아파트의 명칭과 층수 등을 적시 하면서 자살 시도 과정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2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 (중부매일)
대표이사 박 성 규

주 문

(주)중부매일신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5년 10월 7일자 4면 『우울증세 공무원 목매 숨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6일 오후 1시 30분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실내 수영장 관리실에서 〇〇시청 직원 주모(46·7급) 씨가 벽 옷걸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청원경찰 이모(38)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주씨가 평소 우울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의 말을 참고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0. 2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3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주)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14일자 15면 『〇〇온천 대표 횡령혐의 입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13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온천 입욕권과 상품권을 발행,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〇〇온천 대표 양모 씨(66·〇〇군 〇〇면)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〇〇온천 법인용 입욕권과 상품권을 판매한 자금으로 자신의 빚 8,450만 원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그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4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닷컴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박 중 민

주 문

(주)충청닷컴이 발행하는 새충청일보 2005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사건/사고란 『30대 여, 지독한 생활고에 두 딸 안고 '회안의 강' 건너』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어린 두 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비정한 여인이 살인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에서 〇〇〇〇 영업을 하던 남편 유모 씨(41)와 두 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강모 여인(36)은 지난 16일 밤 7시 10분쯤 힘든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울부짖는 두 딸을 품에 안고 〇〇군 〇〇면 〇〇저수지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수 십 분이 지난 뒤 엄마 품에 안겨 처절한 몸부림을 치던 큰딸 은영(가명·7·초교 1년)과 둘째 은희(가명·6) 두 어린 자매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고, 강씨는 줄지에 비정한 엄마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울부짖음을 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이자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남편의 성·나이·직업 등과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5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20일자 7면 『공익요원끼리 폭력 5명 입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전주북부경찰서는 19일 아침에 늦게 나왔다며 후임병들을 폭행한 조모(24·○○구청 공익근무요원) 씨등 5명을 폭력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와맞서 폭력을 휘두른 송모(23·○○구청 공익근무요원)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구 ○○동 ○○구청내 주차장에서 아침모임에 후임병들이 공익요원 녹장을 부린다며 폭력을 행사했고, 후임병 송씨 등은 이에 맞서 상호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6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호남매일)
대표이사 구 양 술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10월 24일자 5면 『부부 싸움 후 집에 방화, 아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보성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최모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분께 ○○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아들의 나이와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7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대표이사 김 기 호

주 문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1월 1일자 3면 『나사빠진 ○구청 공익근무요원』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대구 ○구청의 공익근무 요원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중략... ○구청 ○○과 공익근무요원인 장모(22)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시 ○구 ○○동 모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주인 김모(여·46) 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8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대표이사 배 성 로

주 문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1일자 6면 『구청 공익요원이 식당침입 강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손님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대구 ○구청 공익요원 장모 씨(22·

대구시 ○구 ○○동)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시 ○구 ○○동 김모 씨(여·46)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59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호남매일)

대표이사 구 양 술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호남매일 2005년 11월 8일자 5면 『부부싸움 말리던 7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숨겨』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아들이 찾김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서에 따르면 서모 씨(45)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5분께 ○○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 씨(40)와 서로 다투다 이를 나무라던 아버지 서모 씨(76)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

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0

언 론 사 : 주식회사 내일신문

대표이사 장 명 국

주 문

(주)내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0월 25일자 21면 『아내 불륜 의심 40대 공기총 난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40대가 아내와 상대 남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〇〇면 〇〇〇리 김모(46) 씨의 집에서 〇모(45·정읍시 〇〇동) 씨가 〇씨와 자신의 아내 〇모(42) 씨에게 공기총을 1발씩 발사했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〇씨는 아내 〇씨와 〇씨가 2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〇씨 부부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의 피해자들이 간통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1

언 론 사 :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헤럴드경제)

대표이사 홍 정 옥

주 문

(주)헤럴드미디어가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2005년 10월 25일자 31면 『아내 불륜의심 40대 공기총 난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40대 남자가 아내와 상대 남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24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〇〇면 〇〇〇리 김모(46) 씨의 집에서 〇모(45·정읍시 〇〇동) 씨가 〇씨와 자신의 아내 〇모(42) 씨에게 공기총을 1발씩 발사했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〇씨는 아내 〇씨와 〇씨가 2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〇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의 피해자들이 간통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2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25일자 19면 『40대 남성, 처·내연남에 공기총 난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아내의 불륜을 참지 못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처와 내연남에게 충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50분께 정읍시 OO면 OO리 O모(46) 씨의 집 마당에서 O모(44) 씨가 자신의 처인 O모(42·여) 씨와 집 주인이자 O씨의 내연남인 O씨에게 공기총을 난사했다. ...중략... 한편 O씨와 O씨는 2년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눈치챈 O씨가 지난해 여름 이들 둘에 대해 간통혐의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의 피해자들이 간통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3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대표이사 이 창 승

주 문

(주)전북중앙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0월 25일자 19면 『정읍서 공기총 난사 2명 부상』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이혼심판 계류중인 40대가 처와 내연남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50분께 정읍시 OO면 OOO리 OOO창고 앞 O모 씨(46)의 집에서 O모 씨(45·정읍시 O O동)가 자신의 처 O모 씨(43)와 O씨에게 공기총

2발을 발사했다. ...중략... 한편 경찰은 O씨가 이혼재판이 진행중인 처와 O씨의 내연관계를 눈치챈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의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4

언 론 사 :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장 영 섭

주 문

(주)연합뉴스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24일자 『아내 불륜 의심 40대 공기총 난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40대가 아내와 상대 남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OO면 OOO리 O모(46) 씨의 집에서 O모(45·정읍시 OO동) 씨가 O씨와 자신의 아내 O모(42) 씨에게 공기총을 1발씩 발사했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O씨는 아내 O씨와 O씨가 2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O씨 부부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공기총 난사사건의 피해자들이 간통

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5

언 론 사 : 주식회사 노컷뉴스

대표이사 이 정 식

주 문

(주)노컷뉴스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25일자 지역면 전복란 『‘불륜 의심’ 아내와 의심남에 공기총 발사』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40대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상대 남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다. 24일 오후 7시쯤 전북 정읍시 〇〇면 〇〇리 〇모 씨(46) 집에서 정읍시 〇〇동 〇모 씨(45)가 〇씨와 자신의 아내 〇모 씨에게 공기총을 1발씩 발사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총기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내연 관계임을 의심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6

언 론 사 : 전국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종 필

주 문

전국매일(주)이 발행하는 2005년 10월 18일자 8면 『상습 마약투약 2명 검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조무호)는 대구 신천변 일대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직업이 없는 이모 씨(45)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밤 9시경 대구 〇〇동 모화장실서 4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〇회 투약분 〇〇〇g을 〇〇만 원에 구입 〇〇〇〇방법으로 〇〇하고, 또 다른 피의자 조모 씨(40)는 같은 날 오후 6시경 대구 신천변서 5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〇회분을 〇〇으로 구입해 〇〇에 〇 〇〇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7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대표이사 이 창 승

주 문

(주)전북중앙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0월 17일자 19면 『진안 침수피해 농민 음독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16일 오전 7시40분께 진안군 ○○면 ○○리 김모 씨(64)의 집 안방에서 김씨가 제초제를 음독, 숨져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초 내린 집중 호우로 자신이 경작하던 인삼밭(4년근) 500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그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평소 술을 마시고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해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8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표이사 조 준 호

주 문

(주)대전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0월 31일자 5면 『○○교도소 교도대원 목매 숨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29일 오후 2시쯤 ○○시 ○○구 ○○동 ○○교도소 내 감시대 부근 철망에 ○○교도대 소속 손모 대원(20·○○)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박모 대원(20)이 발견했다. ...중략... 숨진 손 대원은 지난 4월 18일 입대한 뒤 지난 6월초부터 ○○교도소 ○○교도대에 근무해 왔으며 평소 동료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손 대원이 최근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을 비관하는 등 가족 문제로 고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교도대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계급·입대 날짜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69

언 론 사 : 주식회사 중도매일 (중도일보)
대표이사 김 원 식

주 문

(주)중도매일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5년 10월 31일자 5면 『승용차 화재 3명 사망... 교도대원 자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 이와 함께 이날 오후 2시께는 ○○ ○○구 ○○교도소내 감시대 보호철망에 ○○교도대 소속 손모(20·○○) 씨가 군화 끈을 이용,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교도대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0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대일보
대표이사 김 중 욱

주 문

(주)시대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2일자 18면 『부부싸움하다 자살미수 40대 여 구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31일 밤 11시 15분경 〇〇시 〇〇읍 〇〇항 수협부두 5m 해상에서 부부싸움끝에 자살을 기도하던 차모 씨(여·40세·〇〇시 〇〇읍)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차모 씨는 남편 김모 씨(41세)와 부부싸움끝에 자살을 기도하려고 〇〇항 부두에서 바다로 뛰어든 것을 남편 김모 씨가 신고해, 〇〇파출소 홍영보 경사가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 차모 씨를 구조했다. …”는 기사와 자살 미수자의 얼굴이 찍힌 구조 장면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와 함께 주소 읍까지 적시하였으나 얼굴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1. 25.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1

언 론 사 : 주식회사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김 상 훈

주 문

(주)부산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22일자 12면 『〇〇교도소 직원 주점서 만취 난동 ‘물의’』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술값 시비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〇〇교도소 〇〇〇 〇급 공무원 김모(32)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중략…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소속 조모(37) 경장에게 “같은 공무원끼리 이럴 수 있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역(職域)·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2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주)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22일자 15면 『금은방 털은 10대 3명 검거』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21일 익산경찰서는 금은방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손모 군(19·〇〇군 〇〇리) 등 3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군은 지난 9월 16일 새벽 4시 40분께 유모 씨(49·여)가 운영하는 전주시 〇〇동 모금은방 전면 유리창에 시멘트 조각을 이용해 부수고 금품 1,200만 원 상당(경찰서 추산)을 훔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소년법 제68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3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대표이사 배 성 로

주 문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26일자 8면 『말다툼하다 친동생 흥기로 찢려 살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경찰서는 25일 말다툼을 벌이다 친동생을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양모 씨(31·○○시 ○○면 ○○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10분쯤 ○○시 ○○면 ○○리 K원룸에서 자신의 동거녀 문제로 동생(29)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4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주)전민일보가 발행하는 2005년 11월 29일자 15면 『폭력에 멍드는 가정』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이에 앞서 전주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준속폭행)로 ○여자상업고등학교 ○학년 엄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양은 지난 25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모 씨(50)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 어머니의 머리카를 잡고 혼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학중인 학교의 영문 이니셜·학년·어머니의 성과 나이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소년법 제68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5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대표이사 김 기 호

주 문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1월 30일자 5면 『울릉, 선상폭력 둘 입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는 29일 ○○선적 ○호(○○○○○○)○○ 광모(38·제주시) 씨와 장모(34·제주시) 씨를 선상폭력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남씨와 광씨는 ○○읍 ○○○내에서 정박 중이던 ○○호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어구손질용 가위(길이 18cm)로 서로 찔러 외상성기흉, 혈흉, 폐손상 등 중태에 빠져 육지종합병원으로 후송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속 선박명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6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대표이사 김 기 호

주 문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하는 2005년 12월 2일자 5면 『주차단속 공익요원 차에 치어』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 K식당 앞길에서 양모(44·○○시 ○○면 ○○리)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주차 단속을 하던 남구청 공익요원 김모(23·○구 ○○동) 씨가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양씨가 이곳에서 불법주차를 시도했으며 이

를 제지하는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진술에 따라 양씨가 고의로 김씨를 치였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7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채 수 삼

주 문

(주)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2005년 12월 2일자 7면 『‘휴대전화 유서’ 남기고…」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1일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10분쯤 ○○시 ○○면 ○○○리 김모(42) 씨 집에서 김씨의 장남(16·S중 3학년)이 차고지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아들의 자살 이유를 알고 싶어 유품을 정리하던중 핸드폰 문자보관함에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아들 김군은 유서를 통해 “학교 친구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 죽고 싶다. 아빠·엄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괴롭힌 친구 3명의 이름을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

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안 건 번 호 : 2005자심278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대표이사 백 인 호

주 문

(주)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2005년 12월 7일자 6면 『폭설 피해 ○○농장 주인 ‘음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보 도 내 용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육 농장 주인이 신변을 비관해 음독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하다. 6일 오후 4시 40분께 ○○군 ○○면 ○○리 ○○마을 ○○사육농가인 ○농장 안방에서 주인 주모(54) 씨가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들(32)이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농장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5. 12. 14.

□

신청심의 시정권고

사 건 번 호 : 2005신심10

신 청 인 : 이○○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대표이사 홍 선 근

주 문

피신청인의 머니투데이 2005. 9. 23.자 「서태지 블라디보스톡 공연 출연료 3억 5,200만 원 반환 판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2005. 9. 23.자 「서태지 블라디보스톡 공연 출연료 3억 5,200만 원 반환 판결」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가수 서태지측과 공연기획사 KM스타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공연기획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23일 KM스타가 공연할 의사가 없는 서태지측과 공연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태지측을 상대로 낸 출연료반환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에게 3억 5,2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KM스타와 서씨는 작년 4월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라는 공연을 개최키로 작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씨가 KT&G와 작년 5월 블라디보스톡 공연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었기에 공연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KM스타가 이중공연 계약을 이유로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 해당 보도의 본문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기획’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기사화 한 것으로, 제목 ‘블라디보스톡 공연출연료 반환판결’은 전혀 사실과 다른 오보이며 ▲ 법원판결문을 기초해 작성한 기사인 듯하지만 판결문 중 당사자 일방의 입장만을 발췌·조합하여 보도함으로써 기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 서태지측은 공연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오히려 행사 주관사(KM스타)가 공연장 대관에 실패하고, 공연준비와 관련하여 서태지측이 누차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등 KM스타의 무책임한 대회준비로 인해 공연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며 위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사는 ‘상암월드컵 경기장 공연기획’ 관련 소송(2004가합63793 출연료반환등)에 대한 판결문을 기사화 한 것이나 판결문에서는 ‘서태지측(피고측)에게 공연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공연무산은 원고측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수수한 금액은 출연계약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반환의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계약금 반환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블라디보스톡 공연 출연료 반환판결”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연할 의사가 없는 서태지측”, “이중공연계약 체결”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암월드컵경기장 공연 무산의 책임이 마치 서태지측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음이 상당한 이 건 기사는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잘못된 보도라 할 것이다.

이에, 이 건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명예

훼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4.

사건번호: 2005신심13

신청인: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번지

대표이사 방상훈

주 문

1. 신청인의 조선일보 2005. 10. 14.자 「강정구 교수와 함께 민교협서 활동 “강교수 매도세력 너무 무식” 주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2005. 10. 13.자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 주장,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 2005. 10. 14.자 「강정구교수와 함께 민교협서 활동 “강교수 매도세력 너무 무식” 주장」 제하의 각 기사에 대해 각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2005. 10. 13.자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 주장,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 2005. 10. 14.자 「강정구교수와 함께 민교협서 활동 “강교수 매도세력 너무 무식” 주장」 제하의 각 기사에서 ‘장시기 교수는 강정구 교수에 이어 북한 찬양성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장 교수의 칼럼은 북한을 찬양하고 강 교수의 발언을 지지하는 내용 일색이다. 원고지 18장 분량의 이 칼럼에서 장 교수는 김일성을 칭송하는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강 교수 문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 방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며, 장시기 교수의 약력과 함께

얼굴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시기 교수의 얼굴사진을 임의로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장시기 교수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장시기 교수가 2005. 10. 13.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의 취지를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기사를 통하여 '북 찬양', '김일성 칭송' 등으로 사실을 과장, 왜곡하였으며 이 사건 칼럼에 나타난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장시기 교수의 견해라기보다는 '아프리카인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칼럼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기 교수의 견해인양 왜곡 보도하여 장시기 교수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 등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2. 시정권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부분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경우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게시물에 관한 시정권고신청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조선일보 부분에 대하여

1) 조선일보 2005. 10. 14.자 「강정구교수와 함께 민교협서 활동 “강교수 매도세력 너무 무식”주장」 제하의 기사(이하 '해당기사'라 한다)에서 장시기 교수의 얼굴사진을 임의로 게재한 것이 장시기 교

수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하여 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장시기 교수는 대학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의 관심과 관련한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또한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자발적으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하 '이 사건 논쟁'이라 한다)에 참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바, 장시기 교수가 비록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위, 경력, 이 사건 논쟁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논쟁과 관련된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해당기사에서 장시기 교수의 얼굴사진을 그의 동의 없이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장시기 교수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2)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칼럼의 취지를 왜곡 보도하여 장시기 교수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칼럼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인들이 김일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면서 그 평가가 아프리카인들의 견해라고 밝힌 부분도 있으나 그와 아울러 칼럼의 일부에서는 장시기 교수 자신도 근대적 지도자로서의 김일성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해당기사가 아프리카인들의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마치 장시기 교수의 견해인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 칼럼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평가의 시대적 배경이 근대적 관점임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고 칼럼의 결론부분에서 현대에 적합한 지도자로서 근대의 민족주의 지도자 보다는 한반도주의나 아시아주의 가치를 구현할 세계주의의 지도자를 들고 있음에도 해당기사에서는 평가의 바탕이 되는 '근대적'이라는 시대적 관점이 생략된 채 단순히 장시기 교수가 김일성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다고만 강조되어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장시기 교수는 김일성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할 소지가 있고 또한 칼럼의 특정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기사가 왜곡 보도인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어 향후 기사를 작성함에 있

어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에 따라 시정권고하기로 한다.

3)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 및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나 언론중재법 제32조가 정하고 있는 시정권고는 과거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이나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사과문의 게재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강요될 수도 없다) 신청인의 위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건 신청 중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14.

사건 번호 : 2005신심14

신 청 인 : 윤○○

피 신청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이사 최문순

주 문

MBC-TV 2005. 10. 19. 07:00 「뉴스투데이(3부)」 프로그램 중 「IC카드 무료발급」 보도와 관련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MBC-TV가 2005. 10. 19. 07:00 「뉴스투데이(3부)」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는 올 12월까지 기존 자기띠 현금카드를 보안성이 강화된 IC현금카드로 바꾸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물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MBC-TV 2005. 10. 19. 07:00 「뉴스투

데이(3부)」프로그램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IC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현금카드를 IC현금카드로 바꿀 고객은 올해 안으로 절차를 끝내야 수수료가 물지 않게 됩니다. 은행들은 현재 기존의 자기띠 현금카드를 무료로 IC카드로 바꿔주지만 내년부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해당 방송을 통해 ‘모든 시중은행들이 올해까지는 IC카드를 무료로 발급 또는 교체해 주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오인하도록 보도함으로써 해당 방송을 접한 다수의 시청자들이 IC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였다가 IC카드 무료발급을 시행하지 않는 은행의 창구직원들과 승강이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으므로 그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점인 2005. 10. 19일 현재 국내 19개 은행 중 5개 은행(KB, 신한, 외환, 우리, 조흥)만이 IC카드 무료교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순히 “은행들은 현재 기존의 자기띠 현금카드를 무료로 IC카드로 바꿔주지만 내년부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고 보도한 바, 사회일반의 상식과 통념을 가진 시청자가 해당 방송을 시청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모든 은행이 IC카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인식할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IC카드 무료발급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였다가 IC카드 무료발급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은행측과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5.

□

